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2021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 기 도

목 차

Ⅰ. 2021년 보육사업 안내

○ 목 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 5

○ 2021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 6

Ⅱ.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 19

Ⅲ. 2021년 추진방향 및 보육여건

○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20

○ 2021년 보육환경 여건 ····· 20

Ⅳ. 2021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도비> ····· 22

2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비예산> ····· 25

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국·도비> ····· 26

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도비> ····· 28

5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 ····· 29

6 국공립 신임원장 역량강화 교육<도비> ····· 32

7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 34

8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도비> ····· 45

9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지원<도비> ····· 47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1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국·도비> ····· 48
2 열린어린이집 지원<비예산> ····· 50
3 어린이집 급식 · 위생관리<비예산> ····· 51
4 어린이집 환경개선<국·도비> ····· 52
5 어린이집 평가<비예산> ····· 54
6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운영<도비> ····· 56
7 경기도 어린이집 온라인 조사 신규 추진<비예산> ····· 60
8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도비> ····· 61
9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비> ····· 65
1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도비> ····· 67
11 시 · 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인력 배치<도비> ····· 69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1 영유아 보육료 지원<국·도비> ····· 70
2 누리과정 운영 지원<도비> ····· 72
3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비> ····· 74
4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 76
5 가정양육수당 지원<국·도비> ····· 78
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도비> ····· 84
7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 86
8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도비> ····· 87
9 시간제보육 지원<국·도비> ····· 89
10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 95
11 교재교구비 지원<국·도비> ····· 98
12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국·도비> ····· 100
13 차량운영비 지원<국·도비> ····· 102

4. 보육교사 처우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1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 104
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도비> ····· 108
3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도비> ····· 111
4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비> ····· 114
5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국·도비> ····· 118
6 담임교사지원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국·도비> ····· 121
7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국·도비> ····· 124
8 대체교사 인건비<국·도비> ····· 126
9 보조교사 인건비<국·도비> ····· 132
10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국·도비> ····· 137
11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도비> ····· 140
12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국·도비> ····· 141
1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국·도비> ····· 142
14 영아전문(심화)·다문화전문 교육과정 운영<비예산> ····· 143
15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도비> ····· 145
16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도비> ····· 146

V. 부　　록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148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 149
○ 보육료 지원기준표 · 처우개선비 지원표 ····· 150
○ 주요 보육통계표 ····· 151
○ 자치법규(소관조례) ····· 152
  • 경기도 보육조례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 159

Ⅰ. 2021년 보육사업 안내

목 적

이 안내(지침)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보육 조례」,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일반사항

○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안내(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안내를 적용한다.

□ 어린이집 세부운영 규정

○ 시·군 및 각 어린이집은 필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이 안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타 적용사항

○ 보조금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으로 한다.

○ 각종 도 특수시책사업 추진 시 평가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2021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table>
<tr><th>제 목</th><th>2020년도</th><th>2021년도</th><th>변경사유</th></tr>
<tr><td colspan="4">1. 보육의 공공성 강화</td></tr>
<tr><td colspan="4">○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1,800천원 / 인
- 추가반 운영비 : 월500천원 / 반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445천원 / 인
- 조리원 인건비 : 월600천원/인</td><td>○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1,900천원 / 인
- (생략)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457천원 / 인
- (생략)</td><td>지원단가 인상</td></tr>
<tr><td>선정기준
및
절차</td><td>○ 참여 기본요건
- 제2차 --------(생략)
- 제3차 --------(생략)
- 어린이집 --------(생략)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 충족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td><td>○ 참여 기본요건
- (삭제)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이 A등급
- 어린이집 --------(생략)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 충족률 60% 이상(농어촌 50% 이상)
※ 2021년 한시적용(신설)</td><td>어린이집 평가제 변경 적용
정원충족율 기준 완화</td></tr>
<tr><td>선정기준
및
절차</td><td>○ 세부선정기준
- 신규지정 시 신규신청 해당 읍면동의 전년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의 0~1세 아동 수가 364명**(경기도 읍면동 평균 0~1세 아동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읍면동에 1개소, 많은 경우 2개소까지 지정 가능
(기 지정 어린이집 포함)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197,384명 (’19. 12월말 기준 경기도 0~1세 아동 수) / 542개 (경기도 총 읍면동 수)</td><td>○ 세부선정기준
- 신규지정 시 공고일 기준 신규신청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통계의 0~1세 아동 수에 따라 지정
<table><tr><th>구분</th><th>300명 미만</th><th>300명이상</th><th>700명 이상</th><th>1,000명 이상</th></tr><tr><td>지정 가능 개소 수 (기 지정 포함)</td><td>1개소</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td></tr></table>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삭제)</td><td>세부선정기준 완화</td></tr>
<tr><td>선정기준
및
절차</td><td>○ 선정 및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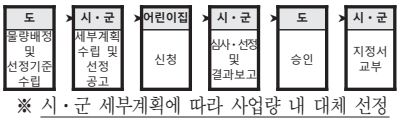

※ 시·군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량 내 대체 선정 가능</td><td>○ 선정 및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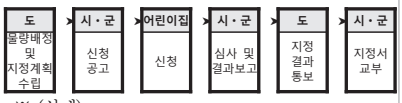

※ (삭제)
※ 운영 현황에 따라 연2~3회 신규 지정(신설)</td><td>선정 절차 변경</td></tr>
</table>

<table>
<tr><th>제 목</th><th>2020년도</th><th>2021년도</th><th>변경사유</th></tr>
<tr><td>지원내용
및 기준</td><td>○ 지원내용
<table><tr><th>구 분</th><th>지원단가</th><th>세 부 사 항</th></tr><tr><td>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td><td>1,800천원/인</td><td>(생략)</td></tr><tr><td>추가반
운영비</td><td>600천원/반</td><td>(생략)</td></tr><tr><td>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td><td>445천원/인</td><td>(생략)</td></tr><tr><td>조리원
인건비</td><td>600천원/인</td><td>(생략)</td></tr></table></td><td>○ 지원내용
<table><tr><th>구 분</th><th>지원단가</th><th>세 부 사 항</th></tr><tr><td>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td><td>1,900천원/인</td><td>(생략)</td></tr><tr><td>추가반
운영비</td><td>600천원/반</td><td>(생략)</td></tr><tr><td>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td><td>457천원/인</td><td>(생략)</td></tr><tr><td>조리원
인건비</td><td>600천원/인</td><td>(생략)</td></tr></table></td><td>지원단가 변경</td></tr>
<tr><td>지원내용
및 기준</td><td>○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은 후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규 지정 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하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 신규, 임용, ----(생략)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생략)
- 야간연장 ----(생략) (0세아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td><td>○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단,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
※ 예) ‘21년 1월 기준 0세 5명, 1세 8명, 2세7명 재원 중일 경우 0세반 3개반, 1세반 3개반이 구성된 월부터 지원, 2세반 아동은 ’22년 2월28일까지 퇴소 완료(신설)

※ 신규, 임용, ----(생략)
- 1세·2세 혼합반 구성 시 해당 월부터 1세 추가반 지원중단, 1세반만으로 구성된 월부터 지원 재개(신설)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생략)
- 야간연장 ----(생략) (0세아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td><td>2세반 이상 아동 퇴소 기준 변경</td></tr>
<tr><td>지정취소
및
운영포기</td><td>○ 지정취소
- 0세아 전용 ----(생략)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 ----(생략)
* 확인방문 경과 : ‘19. 4월까지 사유발생에 대하여 ‘19. 5월 신청한 어린이집까지 적용(한국보육진흥원)
-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제한</td><td>○ 지정취소
- 0세아 전용 ----(생략)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 ----(생략)
* (삭제)
-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제한
※ 대표자 변경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취소 시 적용 제외 (신설)</td><td>경과규정 삭제</td></tr>
</table>

<table>
<tr><th>제 목</th><th>2020년도</th><th>2021년도</th><th>변경사유</th></tr>
<tr><td>(붙임 1)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td><td colspan="2">○ 2021년 변경사항
<table>
<tr><th>기준</th><th>세부기준</th><th>내용</th><th>점수</th><th>가점</th><th>감점</th><th>배점
기준
(증빙)</th></tr>
<tr><td rowspan="6">맞춤형
보육지원
(20점)</td><td rowspan="3">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td><td>. 70% 이상~</td><td>15</td><td rowspan="3">80% 이상
+3점</td><td rowspan="3">50% 미만
-3점</td><td rowspan="3"></td></tr>
<tr><td>. 65% 이상~70% 미만</td><td>11</td></tr>
<tr><td>. 65% 미만</td><td>8</td></tr>
<tr><td rowspan="2">야간연장보육 실시
(5점)</td><td>. 지정</td><td>5</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미지정</td><td>3</td></tr>
<tr><td rowspan="7">보육교직원
전문성
(15)</td><td rowspan="3">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5점)</td><td>. 10년 이상</td><td>5</td><td rowspan="3">12년이상
+3점</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5년 이상~10년 미만</td><td>3</td></tr>
<tr><td>. 5년 미만</td><td>1</td></tr>
<tr><td rowspan="4">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td><td>. 70% 이상</td><td>10</td><td rowspan="4">80% 이상
+3점</td><td rowspan="4">40% 미만
-3점</td><td rowspan="4"></td></tr>
<tr><td>. 60% 이상~70% 미만</td><td>8</td></tr>
<tr><td>. 50% 이상~60% 미만</td><td>6</td></tr>
<tr><td>. 50% 미만</td><td>4</td></tr>
<tr><td rowspan="3">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점)</td><td rowspan="3">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점)</td><td>. 3건 이상</td><td>10</td><td rowspan="3">최근
3년 이내
시상 +3점</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2건 이상</td><td>7</td></tr>
<tr><td>. 1건 이상</td><td>5</td></tr>
<tr><td rowspan="6">운영기간
및
정원충족률
(20점)</td><td rowspan="3">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0점)</td><td>. 5년 이상</td><td>10</td><td rowspan="3">7년 이상
+3점</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3년 이상~5년 미만</td><td>7</td></tr>
<tr><td>. 3년 미만</td><td>5</td></tr>
<tr><td rowspan="3">정원충족률
* 공고일 전 6개월 평균
* 농어촌지역 50% 기준
(10점)</td><td>. 80% 이상~</td><td>10</td><td rowspan="3">90% 이상
+3점</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75% 이상~80% 미만</td><td>7</td></tr>
<tr><td>. 70% 이상~75% 미만</td><td>5</td></tr>
<tr><td rowspan="4">건물소유
및
안정성
(20점)</td><td rowspan="2">어린이집 소유형태
(10점)</td><td>. 자가</td><td>1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임차</td><td>7</td></tr>
<tr><td rowspan="2">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10점)</td><td>. 일치</td><td>1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불일치</td><td>0</td></tr>
<tr><td rowspan="3">시・군
특성화지표
(15점)</td><td rowspan="3">산업단지,
신혼부부거주,
영아보육수요,
입소대기 등
* 시・군별 설정 적용
(15점)</td><td>. 상</td><td>15</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중</td><td>10</td></tr>
<tr><td>. 하</td><td>7</td></tr>
<tr><td rowspan="5">기타 가점
(+5점)</td><td>열린어린이집 지정</td><td>. 열린어린이집 지정</td><td>2</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CIS 회계보고
건수</td><td>. 9건 이상</td><td>5</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td></tr>
<tr><td>. 6건 이상</td><td>3</td></tr>
<tr><td>. 3건 이상</td><td>1</td></tr>
<tr><td colspan="6">합계</td></tr>
</table></td><td>배점 기준 완화</td></tr>
<tr><td colspan="4">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td></tr>
<tr><td colspan="4">○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운영</td></tr>
<tr><td>사업내용</td><td>○ 사업내용
- 〈신 설〉

- 〈신 설〉

-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평가제, 보육과정 등) 및 교육 추진
• (사전) 평가절차・방법, 지표 교육
(사후) 한국보육진흥원 ‘지역자원가’ 참여</td><td>○ 사업내용
- <u>육종센터장 및 보육컨설턴트 대상 재무・회계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u>
- <u>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및 재무・회계 교육 추진</u>
-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평가제, 보육과정 등) 및 교육 추진
• (사전) 평가절차・방법, 지표 교육
(사후) 한국보육진흥원 ‘지역자원가’ 참여</td><td>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역할 확대・변경</td></tr>
</table>

제 목	2020년도	2021년도	변경사유
		-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대상 전산실습 교육 및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신 설)	
운영방향	○ <신 설>	○ 운영방향 ㅇ (재무·회계컨설팅 신설) 재무·회계 실무, 시스템 전산실습, 1:1 컨설팅 지원 - 교육대상 :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 교육내용 : 재무·회계이론 및 어린이집 회계실무 운영, 시스템 전산실습 - 교육방법 : 소그룹 교육, 어린이집 1:1 현장 방문 등 맞춤형 교육운영 ㅇ (평가컨설팅 축소) (기존) 사전·합동·추가·사후→(변경) 사전·사후	운영방향 변경
운영기준	○ <신 설>	○ 운영기준 ㅇ 컨설턴트 채용기준 - (무기계약) 컨설턴트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신규 채용시 무기계약 원칙 ※ 다만, 인력운영은 센터장 권한사항으로 계약직(24개월 이내) 채용 후 자체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하여 채용할 수 있음. - (급여기준) 무기계약직 봉급표 '1호봉~10호봉' (일반직공무원 8급 기준 적용) ※ 시·군별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내(1~10호봉)" 에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신규 채용 시에는 6호봉 이하로 적용함. ㅇ 사업비 집행기준 - (인건비) 기본급, 수당(정액수당, 기타수당 등),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별 조정 집행할 수 있음(단,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외)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 인건비 예산액 2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운영비) 여비, 교재·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 등 ※ 운영비를 '자산물품취득비 및 시설개선비' 로 사용 불가 - 다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소액물품구입은 가능하며, 50만원 이상의 물품 필요시 '임차' 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운영기준 신설

제 목	2020년도	2021년도	변경사유
		고려, 운영비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지원방법 및 내용	○ 지원내용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보육과정 운영 ----(생략) · 학습활동과 ----(생략)	○ 지원내용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보육과정 운영 ----(생략) · 학습활동과 ----(생략) · 정부 지원받는 교육은 제외(신설)	지원기준 신설
지원방법 및 내용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생략)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인증종료(평가제 변동)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생략) • <신 설>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생략)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이 공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삭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삭제>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삭제>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생략)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차감 ※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지급기준 명확화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추진 안내	○ 사업대상 ※ 평가결과 발표일의 익월부터 지원	○ 사업대상 ※ 평가등급 공표일의 익월부터 지원	지급기준 명확화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근로 조건 명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인력 배치			
사업추진 안내	○ <신 설>	○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인력 배치 o 사업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30개소(도1, 시군29) o 사 업 량 : 58명 - 놀이지도사 29, 장애위험영유아상담지원 29	신규사업

<table>
<tr><th>제 목</th><th>2020년도</th><th>2021년도</th><th>변경사유</th></tr>
<tr><td colspan="4">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td></tr>
<tr><td colspan="4">○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td></tr>
<tr><td>사업개요</td><td>○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table><tr><th>구분</th><th>민간
(3세)</th><th>민간
(4,5세)</th><th>가정
(3~5세)</th></tr><tr><td>수납한도액</td><td>329</td><td>306</td><td>332</td></tr><tr><td>정부지원
보육료</td><td>240</td><td>240</td><td>240</td></tr><tr><td>차액보육료</td><td>89</td><td>66</td><td>92</td></tr></table></td><td>○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table><tr><th>구분</th><th>민간
(3세)</th><th>민간
(4,5세)</th><th>가정
(3~5세)</th></tr><tr><td>수납한도액</td><td>353</td><td>330</td><td>356</td></tr><tr><td>정부지원
보육료</td><td>260</td><td>260</td><td>260</td></tr><tr><td>차액보육료</td><td>93</td><td>70</td><td>96</td></tr></table></td><td>수납한도액 변경으로 지원단가 인상 (2021. 3월부터 적용)</td></tr>
<tr><td colspan="4">○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td></tr>
<tr><td>사업개요
사업대상</td><td>o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단,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td><td>o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기지정(‘20.7월말 이전)한 어린이집 (단,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td><td>사업전면 개편 예정으로 기지정 시설에 한해 ‘21년까지 인건비지원 유예</td></tr>
<tr><td>운영기준</td><td>o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이상 감면하도록 행정권고
〈 신 설 〉</td><td>o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이상 감면하도록 행정권고
※ 단, 보육아동이 적은 경우 감면 총액이 월 지원(보조)액인 180만원을 초과 권고</td><td></td></tr>
<tr><td>지정취소</td><td>o 시장·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사업량 내 대체지정 가능)</td><td>o 시장·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사업량 내 대체지정 불가)</td><td>사업전면 개편 예정으로 기지정 시설 지정 취소시 대체 지정없이 자연 감소</td></tr>
<tr><td>지정신청서</td><td>o 첨부 1</td><td>〈삭 제〉</td><td></td></tr>
<tr><td colspan="4">○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 ‘20.3.1부터 사업명 변경 시행</td></tr>
<tr><td>사업명</td><td>○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td><td>○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td><td>보건복지부 용어 개정사항(시간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반영</td></tr>
<tr><td>사업개요</td><td>○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td><td>○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야간연장 어린이집</td><td></td></tr>
<tr><td>사업추진안내</td><td>○ 별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생략)</td><td>○ 별도의 야간연장 보육교사---(생략)</td><td></td></tr>
<tr><td colspan="4">○ 어린이집 운영 지원</td></tr>
<tr><td>지원제외</td><td>o (운영비)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중인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td><td>o (운영비) ① 법령 및 (생략) ------
----
----------</td><td>도 회계시스템 미가입 어린이집 지원 제외</td></tr>
</table>

제 목	2020년도	2021년도	변경사유
	익월부터 자격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신 설>	---------- ② '20.12.31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어린이집 ※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명단은 관련 팀(보육품질관리팀)에서 별도 시달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평일 8시간----(생략) * 월급여(생략) *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평일 8시간----(생략) * 월급여(생략) * <삭제>	중복문구정비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생략)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평가제 변동) 어린이집은 인증종료(평가제 변동)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생략) • <신 설>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생략)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이 공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삭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삭제>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삭제>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생략)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차감 ※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지급기준 명확화
사업추진안내 (지급방식)	※ 개인별 입금계좌에 "00월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 개인별 입금계좌에 "00월 경기도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문구정비
사업추진안내 (지원방식)	- 12월분은(생략) ※ 보육교사가 다른(생략)	- 12월분은(생략) ※ 지원대상자가 다른(생략)	문구정비
사업추진안내 (지원방식)	- 거짓으로(생략)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 거짓으로(생략) ※ <삭제>	중복문구정비

제 목	2020년도	2021년도	변경사유
사업추진안내 (세부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 (생략) 여성교사 (전액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전액 지급)	-「근로기준법」 제74조 (생략) 여성교사 〈삭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지급기준 명확화 (국비기준준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평일 8시간----(생략) * 월급여(생략) *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평일 8시간----(생략) * 월급여(생략) * 〈삭제〉	중복문구정비
사업추진안내 (지급기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 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	문구정비
사업추진안내 (지급방식)	※ 개인별 입금계좌에 "00월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 개인별 입금계좌에 "00월 경기도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문구정비
사업추진안내 (지원방식)	- 거짓으로(생략)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 거짓으로(생략) ※ 〈삭제〉	중복문구정비
사업추진안내 (세부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 (생략) 여성교사 (전액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전액 지급)	-「근로기준법」 제74조 (생략) 여성교사 〈삭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지급기준 명확화 (국비기준준용)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평일 8시간----(생략) * 월급여(생략) *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평일 8시간----(생략) * 월급여(생략) * 〈삭제〉	중복문구정비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신 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지급기준 명확화 (국비기준준용)

<table>
<tr><th>제 목</th><th>2020년도</th><th>2021년도</th><th>변경사유</th></tr>
<tr><td></td><td>- 〈신 설〉</td><td>-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td><td></td></tr>
<tr><td>사업추진안내
(지급방식)</td><td>※ 개인별 입금계좌에 “00월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td><td>※ 개인별 입금계좌에 “00월 경기도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td><td>문구정비</td></tr>
<tr><td>사업추진안내
(지원방식)</td><td>- 거짓으로(생략)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td><td>- 거짓으로(생략)
※ 〈삭제〉</td><td>중복문구정비</td></tr>
<tr><td>사업추진안내
(제외대상)</td><td>○ 보조교사(생략)
※ 단,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야간연장 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td><td>○ 보조교사(생략)
※ 단, 0세아 전용,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야간연장교사 (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td><td>지급기준 명확화</td></tr>
<tr><td colspan="4">○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td></tr>
<tr><td>사업추진안내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td><td colspan="2">○ 2021년 변경사항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rowspan="2">지원 사유</th><th rowspan="2">지원 일수</th><th colspan="4">지원 대상×</th></tr>
<tr><th>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th><th>교사 겸직 원장</th><th>교사 겸직 대표자</th><th>조리원</th></tr>
<tr><td colspan="2" rowspan="15">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td><td>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어린이집사후방원(컨설팅)지원</td><td>회당1일</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생략</td><td>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td><td>기간 제한없음</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생략</td><td>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일</td><td>○</td><td>○</td><td>○</td><td>○</td></tr>
<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3일</td><td>○</td><td>○</td><td>○</td><td>○</td></tr>
<tr><td>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생략</td><td>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td><td>1~10일
최대 10일</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생략</td><td>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r><td>생략</td><td>생략</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국비지원기준 준용</td></tr>
<tr><td></td><td>※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하도록 반드시 안내</td><td>※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삭제〉</td><td>지원순서 명확화</td></tr>
<tr><td></td><td>※ 〈신 설〉</td><td>※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td><td>지원대상 명확화</td></tr>
</table>

제 목	2020년도	2021년도	변경사유
		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사업추진안내 (사업관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는 대체인력이 동일 자격 소지자여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는 동일 자격 소지자 우선채용	지원대상 명확화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지원단가 : - 보육교사 : 일 82,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2020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 조 리 원 : 일 69,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8,625원)으로 지급 가능, 단 지급액 원단위 발생시 올림하여 지급(예 : 7시간=60,375원 => 60,380원 지급)	○ 지원단가 : - 보육교사 : 일 83,14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2021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0,393원)으로 지급 가능, 단, 지급액 원단위 발생시 올림하여 지급(예 : 7시간=72,751원=> 72,760원 지급)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 리 원 : 일 70,00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8,750원)으로 지급 가능, 기존 조리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추가근무 가능(단, 최대 8시간)<삭제>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연도변경에 따른 지원단가 변동 및 국비 기준 준용
사업추진안내 (유의사항)	○ 시・군----(생략) ※ 채용신체검사서----(생략) ※ 성범죄경력----(생략) ※ <신 설> ※ <신 설>	○ 시・군----(생략) ※ 채용신체검사서----(생략) ※ 성범죄경력----(생략) ※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국비지원사업 준용
○ 2021년 보건복지부 지침 주요 내용			
학과제 연착륙 지원	나. 보육교직원 채용 1)채용조건	나. 보육교직원 채용 1)채용조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성

제 목	2020년도	2021년도	변경사유
	나)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신 설>	나)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은 보육교사 1급, 2급 자격소지자로 제한함 (적용시점 ’22.1월부터)	강화
보육교직원 잠복결핵 감염 관리	가. 건강관리 3) 건강주치의제도 다) 검사항목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결핵검진: 매년 실시(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하되,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보육교직원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 <신 설> • <신 설>	가. 건강관리 3) 건강주치의제도 다) 검사항목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결핵검진: 매년 실시(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하되,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보육교직원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 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판정 시 치료 권고 • 보육교직원이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배양검사 기간(3~8주)*동안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업무 배제)토록 함 * 결핵진료지침 4판에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보육교직원 잠복결핵 감염 관리구체화
국공립 전환대상 기준 확대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 < 신 설 >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중 의무어린이집은 아니나, 보육수요 발생 등으로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기준 완화

제 목	2020년도	2021년도	변경사유
		하는 시설 ※ 예 : 해당 읍면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경우	
	(2) 지원규모 ○ 최대지원액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 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 기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우선함	(2) 지원규모 ○ 최대지원액 -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의무어린이집 포함)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 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 삭제 >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우선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가. 설치 및 운영 <중략>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신 설>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7-0433(2017. 10. 19))	가. 설치 및 운영 <중략>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 5인 이상 9인 이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어린이집: 10인 이상 15인 이내 - 단,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7-0433(2017. 10. 19))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모별 구성인원 세부화
임면보고 간소화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대체교사 임면 구비서류 조건부 완화

제 목	2020년도	2021년도	변경사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신 설〉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매월 호봉 승급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6) 호봉승급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 2020년 호봉인정기준 개선에 따른 호봉 재획정 기간을 고려, 2020. 1. 1. 기준으로 2월까지 재획정 완료 - ’20년 1월 승급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호봉인정기준 개정내용은 2월부터 적용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6) 호봉승급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시스템 개발 이후)	시스템 개발 이후 호봉승급일 변경
원장의 겸임 제한 완화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생략〉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연·강의·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생략〉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연·강의·발표·토론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과 지자체 보고 후 할 수 있음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 중 세미나 등 참석 조건부 허용
어린이집 업무편의	마. 지원 절차 3) 지원금 신청(어린이집→시군구) ○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마. 지원 절차 3) 지원금 신청(어린이집→시군구) ○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5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연장보육료 신청기한 완화

Ⅱ.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Ⅲ. 2021년 추진방향 및 보육여건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정책 목표: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중점 추진 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서비스 지원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2021 보육 환경여건

◇ 〔저출산 영향〕 영유아(만0~6세)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

○ 저출산의 영향으로 道 영유아(만0~6세)인구 3년간 5.9만명(7.2%) 감소

- 道 영유아 인구: ('18년) 81.6만명 → ('19년) 77.7만명 → ('20년) 75.7만명
- 전국 영유아인구: ('18년) 290.5만명 → ('19년) 272.7만명 → ('20년) 256.2만명 △10% 감소

○ 특히, 도내 만0세 영유아 인구는 3년간 1.1만명(12.6%) 감소

- 道 만0세아 인구: ('18년) 8.7만명 → ('19년) 8.2만명 → ('20년) 7.6만명
- 전국 만0세아인구: ('18년) 31.7만명 → ('19년) 29.5만명→ ('20년) 26.5만명(3만명 △10.1% 감소)

◇ 〔인구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신도시 중심 인구증가

○ 도내 여성경제참여인구 3년간 84천명(5.3%) 증가, 전국 증가 492천명의 17%

- 여성경제참여인구 : ('17년) 286.5만명 → ('18년) 291만명 → ('19년) 300.2명
- 도 내 인구 증가 : ('17년) 1,287만명 → ('18년) 1,308만명 → ('19년) 1,324명

○ '20년 코로나19에 따른 재원아동수 감소

- 어린이집 수 : ('18년) 11,682개소 → ('19년) 11,305개소 → ('20년) 10,761개소
- 어린이집재원 아동수 : ('18년) 39.3만명 → ('19년) 38.9만명 → ('20년) 35.9만명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

○ 기존 종일반 보육 체계 → 기본보육(09:00~16:00), 연장보육(16:00~19:30)

○ 연장반 전담교사 인력수급 → 연장반 전담교사 범위 확대, 탄력보육, 인력뱅크운영

Ⅲ. 2021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지원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 · 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2

공동주택 단지,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농어촌 지역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목　　표 :**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150개소 이상(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

ㅇ 사 업 량(본예산) : 89개소 * 시군 추가 수요분 지속 발굴

ㅇ 사업내용

확충 유형	내용	지원기준
신축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최대 2,157백만원
매입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최대 2,157백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500세대 이상 국공립 의무설치('19.9.25.시행)	최대 110백만원
장기임차(5~10)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18년~)	최대 210백만원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20년~)	최대 150백만원

※ 기자재비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66,604,615	25,642,352	26,618,989	14,343,274
국 비	34,452,711	13,157,176	13,859,898	7,435,637
도 비	16,636,148	6,410,583	6,639,747	3,585,818
시군비	15,515,756	6,074,593	6,119,344	3,321,819

※ 확충실적 : (2019년) 162개소 (2020년) 161개소

※ 보 조 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향후계획**

ㅇ 공동주택리모델링, 민간·가정 장기임차 등 지속 확대

ㅇ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미설치 시군 설치 * 19개 시군 21개소 운영

ㅇ 국공립이용률 정부합동평가 목표(3%p) 달성 위해 신속 개원 운영

참고 1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안)

(단위 : 개소)

시군	본예산 기준			수요조사(안)				
	계	신축	리모델링	계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생활SOC
계	**89**	**6**	**83**	**153**	**14**	**123**	**8**	**8**
수 원 시	4	-	4	7	1	6	-	-
용 인 시	2	-	2	5	-	4	-	1
성 남 시	4	-	4	16	1	13	1	1
부 천 시	2	1	1	2	1	1	-	-
화 성 시	6	-	6	14	1	13	-	-
안 산 시	2	1	1	4	1	3	-	-
안 양 시	2	-	2	3	1	2	-	-
평 택 시	11	-	11	12	-	11	-	1
시 흥 시	1	-	1	10	3	7	-	-
김 포 시	6	-	6	6	-	6	-	-
광 주 시	2	-	2	3	-	3	-	-
광 명 시	3	-	3	3	-	3	-	-
군 포 시	0	-	-	0	-	-	-	-
하 남 시	10	-	10	19	-	17	-	2
오 산 시	2	-	2	1	-	1	-	-
이 천 시	1	-	1	3	-	1	2	-
안 성 시	2	1	1	3	1	2	-	-
의 왕 시	1	-	1	1	-	1	-	-
양 평 군	0	-	-	0	-	-	-	-
여 주 시	0	-	-	0	-	-	-	-
과 천 시	3	-	3	3	-	3	-	-
고 양 시	5	1	4	8	2	5	-	1
남양주시	8	1	7	14	1	8	5	-
파 주 시	5	-	5	7	-	7	-	-
의정부시	3	1	2	2	-	2	-	-
양 주 시	2	-	2	3	-	2	-	1
구 리 시	1	-	1	2	-	1	-	1
포 천 시	0	-	-	1	1	-	-	-
동두천시	1	-	1	1	-	1	-	-
가 평 군	0	-		0	-	-	-	-
연 천 군	0	-	-	0	-	-	-	-

참고 2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 개소, %)

연번 (이용률 순)	시군	전체	국공립	운영률(%)	영유아 이용률(%)
	계	**10,761**	**1,086**	**10.1**	**17.7**
1	연 천 군	29	7	24.1	34.5
2	오 산 시	252	41	16.3	31.9
3	과 천 시	46	10	21.7	31.6
4	성 남 시	580	76	13.1	28.6
5	광 명 시	244	30	12.3	28.4
6	양 평 군	53	11	20.8	28.2
7	의 왕 시	131	20	15.3	25
8	하 남 시	243	38	15.6	24.6
9	가 평 군	34	6	17.6	23
10	시 흥 시	484	68	14	22.6
11	군 포 시	225	25	11.1	21.9
12	고 양 시	717	82	11.4	20.9
13	구 리 시	152	14	9.2	19.8
14	동두천시	84	8	9.5	19.3
15	김 포 시	440	43	9.8	19.1
16	남양주시	620	74	11.9	18.3
17	포 천 시	94	17	18.1	18.1
18	화 성 시	866	98	11.3	18
19	안 양 시	421	35	8.3	17.4
20	양 주 시	223	23	10.3	16.4
21	평 택 시	419	45	10.7	16.1
22	의정부시	403	33	8.2	15.7
23	안 산 시	464	40	8.6	14.7
24	부 천 시	559	50	8.9	14.2
25	수 원 시	982	57	5.8	12.9
26	안 성 시	164	14	8.5	12.9
27	이 천 시	158	17	10.8	12.3
28	파 주 시	408	26	6.4	11.6
29	광 주 시	333	26	7.8	10.6
30	용 인 시	860	47	5.5	9.5
31	여 주 시	73	5	6.8	5.7

1-2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비예산

보육기반팀 ☏8008-473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사업장 등 운영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이상 고용 사업장

ㅇ 설치유형 : 직접설치 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 단독(공동) 직접설치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보육
- 위탁보육 :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 위탁보육

ㅇ 재원부담 : 사업주는 보육 필요 비용의 50% 이상 부담

□ 향후계획

ㅇ '20.12.31.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21.1.10 ~ 5.3 / (조사결과 공표) ' 21.5월 예정

ㅇ 단독(공동) 직접설치 어린이집 관리 : 284개소(비의무 사업장 포함)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이행 여부 지속 관리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ㅇ 부과주체
- 도지사 : 관할 시·군청 중 미이행 사업장
- 시장·군수 : 그 외 모든 의무 미이행 사업장

ㅇ 부과방법 : 이행명령(1·2차), 이행강제금(1·2차) 부과

ㅇ 부과금액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

※ 단, 회당 최대 1억원 부과

ㅇ 부과시기 : 최초 이행명령 → 미이행 시 다시 이행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 시 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2회) (1년간 2회)

1-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도비

보육정책팀 ☏8008-2598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연 혁
- ㅇ 시범 운영 : 2011년 7월~
- ㅇ 본격 운영 : 2012년 7월~
- ㅇ 운영비 지급기준 변경 : 2018년 1월~ ※ 운영비 지원 상한액(월 최대 1,000만원) 폐지

□ 사업개요
- ㅇ 대 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일부 제외)
- ㅇ 기 간 : 2021. 1월 ~ 12월
- ㅇ 사 업 량 : 625개소
- ㅇ 총사업비 : 22,747백만원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신규 선정 후 보건복지부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예정

□ 지원기준
※ 신규 및 재선정 기관 및 기존 운영 중인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ㅇ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 지급

	구 분	단 가	기 준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	기본보육반 1개반당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반당
3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69,349,730	23,809,800	22,792,600	22,747,330
국 비	38,890,000	13,003,000	12,764,000	13,123,000
도 비	18,446,840	6,201,480	6,037,660	6,207,700
시군비	12,693,560	4,605,320	3,990,940	4,097,300

(단위 : 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608개소(증20)	610개소(증2)	641개소(증31)	639개소(감2)	

참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2020. 12월 말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개소	20인 이하	21~ 35인	36~ 49인	50~ 62인	63~ 76인	77~ 86인	87~ 97인	98~ 111인	112~ 123인	124인 이상
합 계	**639**	**418**	**29**	**47**	**23**	**24**	**17**	**32**	**28**	**7**	**14**
남 부	**502**	**334**	**22**	**36**	**19**	**21**	**13**	**21**	**21**	**4**	**11**
수원시	47	38	2	3	3	-	1	-	-	-	-
성남시	32	32	-	-	-	-	-	-	-	-	-
안양시	36	29	-	3	1	1	-	-	2	-	-
부천시	53	43	1	4	1	1	1	2	-	-	-
광명시	24	18	-	2	1	2	1	-	-	-	-
평택시	27	14	3	1	-	2	-	2	3	1	1
안산시	33	14	3	1	4	-	3	4	4	-	-
오산시	29	25	-	2	-	-	1	-	-	-	1
시흥시	26	19	2	4	-	1	-	-	-	-	-
군포시	11	11	-	-	-	-	-	-	-	-	-
의왕시	5	3	-	-	-	1	1	-	-	-	-
하남시	8	1	-	2	1	1	1	-	1	-	1
용인시	39	25	1	4	4	1	-	1	2	-	1
이천시	24	5	4	1	-	4	2	3	3	-	2
안성시	22	9	-	2	1	4	-	4	1	1	-
김포시	12	10	-	-	2	-	-	-	-	-	-
화성시	13	8	1	1	1	-	-	1	1	-	-
광주시	27	21	-	-	-	1	1	-	-	1	3
여주시	17	4	4	4	-	-	1	-	3	1	-
양평군	17	5	1	2	-	2	-	4	1	-	2
북 부	**137**	**84**	**7**	**11**	**4**	**3**	**4**	**11**	**7**	**3**	**3**
고양시	32	26	-	3	2	-	1	-	-	-	-
의정부	11	7	1	-	-	-	-	2	1	-	-
남양주	34	24	2	2	-	1	1	3	1	-	-
파주시	18	9	1	2	2	-	-	2	1	1	-
구리시	10	7	1	1	-	-	-	1	-	-	-
포천시	14	3	2	-	-	2	-	1	2	2	2
양주시	9	6	-	-	-	-	1	1	1	-	-
동두천	1	-	-	-	-	-	1	-	-	-	-
가평군	4	-	-	1	-	-	-	1	1	-	1
연천군	4	2	-	2	-	-	-	-	-	-	-

1-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도비

보육정책팀☎8008-2598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ㅇ 사업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영유아 20,467명
ㅇ 지원내용 :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30천원 지원
ㅇ 총사업비 : 7,379백만원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4,026,516	8,735,400	7,912,440	7,378,676
도 비	6,876,994	2,554,416	2,259,504	2,063,074
시군비	17,149,522	6,180,984	5,652,936	5,315,602

□ **사업 추진 안내**

ㅇ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ㅇ **지급기준**
- 전월 말일 재원아동(현원) 기준으로 지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ㅇ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해당 월 미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및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ㅇ **지원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1-5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도비

보육정책팀 ☎8008-259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인건비(조리원)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12년 7월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ㅇ 사 업 량 : 625개소

ㅇ 총사업비 : 5,373백만원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ㅇ 지원기준 :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조리원 채용기준에 의거)

지원기준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 고
월지원액	60만원	90만원	보육현원 기준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6,414,120	5,720,400	5,320,800	5,372,920
도 비	4,481,604	1,573,452	1,447,560	1,460,592
시군비	11,932,516	4,146,948	3,873,240	3,912,328

□ 사업 추진 안내

ㅇ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ㅇ **지원요건**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별도 채용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교직원 전원 4대 보험 납부 완료, 퇴직급여제도 설정・운영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교직원(조리원) 배치기준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ㅇ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규모 변동 시 변동일자가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해당 규모의 월 지원액 지급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시 지원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동 보조금은 모두 회수하고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현원 40인 이상시 90만원 지급) ⇒ 단, 현원감소 시 2개월 유예기간 적용 (단서조항 신설)

ㅇ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신규인증,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times\frac{\text{근무일수(토, 공포함)}}{\text{해당월의 일수}}$)

- 지원기준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ㅇ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ㅇ **지원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1-6 국공립 신임원장 역량강화 교육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2556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40%」 도정과제·민선7기 공약 목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대상 직무역량 강화 및 공공성 마인드 함양으로 보육품질 제고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ㅇ 교육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19~20년, 신규·전환) 300명

ㅇ 주　　관 : 도 직접 운영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 추진

ㅇ 총사업비 : 30,000천원(도비 100%, 사무관리비)

ㅇ 교육운영 : 총 6회 / 300명(1회 당 50명 내외)

ㅇ 교육과정 : 공보육직무 및 재무·회계실무(24시간), 도 시스템 전산실습(6시간)

□ 교육핵심가치

ㅇ (공공성)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사업 이해

ㅇ (투명성)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ㅇ (전문성) 운영자의 리더십과 영유아지도를 위한 보육 전문성 강화

ㅇ (안전성) 도와주고 함께 해결하는 예방위주의 보육안전성 확보

ㅇ (개방성) 물리적 환경 구성과 부모참여를 통한 보육개방성 확대

□ 추진 일정

1월 ~ 3월		4월 ~ 7월		8월		9월 ~ 11월		12월
시·군과 교육협의 (상반기 교육준비)	▶	**상반기 교육운영 (1 ~ 3회)**	▶	시·군과 교육협의 (하반기 교육준비)	▶	**하반기 교육운영 (4 ~ 7회)**	▶	**직무교육 결과보고**

참 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직무교육 (30시간)

과 정	주 제	목 적	시간 (30)
공공성	• 보육공공성 및 정책 이해	• 보육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보육정책의 현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2
	• 경기도 공보육 추진과 보육사업 이해	•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지침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투명성	•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	6
	•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 관리시스템 전산실습	•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 관리는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	2
	• 어린이집 운영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2
전문성	• 원장 감성리더십 -리더십의 이해 -감성 리더십 -보육현장에서의 리더십	• 리더십의 개념, 구성요소, 유형을 이해함 • 감성과 리더십의 관계를 앎 • 감성 리더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실천 할 수 있음 • 보육현장에서 감성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	4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과 지원 - 표준보육과정 총론 -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 보육과정 운영지원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기초를 이해함 • 0-1세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할 수 있음 • 2세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 •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	4
안전성	• 어린이집 안전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의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2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관리	• 친환경 먹거리의 개념 및 중요성을 알고, 영유아의 친환경 먹거리 먹기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함	2
	• 영유아 인권친화교육	•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방성	• 부모 소통 및 지역사회협력 - 또 하나의 부모 '어린이집'	• 투명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열린 보육기관 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관별 프로그램 및 환경을 구성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을 기름	2

1-7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4715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 부응하여 출산율 제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사업시행 : 2008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301개소

ㅇ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1,900천원 / 인
- 추가반 운영비 : 월 600천원 / 반
-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 457천원 / 인
- 조리원 인건비 : 월 600천원 / 인

ㅇ 총사업비 : 25,60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01	25,609,464	-	6,914,362	18,695,102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76,612,444	24,152,020	26,850,960	25,609,464
도 비	20,450,500	6,424,980	7,111,158	6,914,362
시군비	56,161,944	17,727,040	19,739,802	18,695,102

□ 사업 추진 안내

가. 선정기준 및 절차

ㅇ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정부 인건비 미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중복 불가

ㅇ 참여 기본요건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이 A등급
-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A등급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농어촌 50% 이상)
※ 2021년 한시적용
-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각각 80% 이상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ㅇ 제외대상

- 공고일이 속한 월 전월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진행, 예정) 어린이집(원장)
※ 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처분 이행 완료한 경우는 제외
- 원장이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운영자가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ㅇ 세부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총 합계 점수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선정

구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 · 전문성 (45)	맞춤형 보육지원 (20)	보육교직원 전문성 (15)	자체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인프라 · 특성화 (55)	운영기간 · 정원충족 (20)	건물소유 · 안정성 (20)	시 · 군 특성화지표 (15)

※ [붙임 1] 세부 선정기준표

- 신규지정 시 공고일 기준 신규신청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통계의 0~1세 아동 수에 따라 지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구분	300명 미만	300명이상	7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정 가능 개소 수 (기 지정 포함)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 순위
  - 1순위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미설치된 행정동 소재 어린이집
  - 2순위 : 정원 대비 보육실 면적이 넓은 어린이집
  - 3순위 : 0세아 보육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선정 및 지정절차

도	➤	시·군	➤	어린이집	➤	시·군	➤	도	➤	시·군
물량배정 및 지정계획 수립		신청 공고		신청		심사 및 결과보고		지정 결과 통보		지정서 교부

※ 운영 현황에 따라 연2~3회 신규 지정

나.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 입소기준 : 입소월 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 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반편성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반 구성 가능
  -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야간연장반은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
    ※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사후관리

- 홍보 : 도, 시·군을 통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지원
- 표창 : 우수 보육교직원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 교육 및 컨설팅 : 우수 어린이집 원장 컨설팅 및 원장 자율모임 공유
- 모니터링 : 신규 및 기존 어린이집 대상 연1회 실시
  - 제외대상, 운영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등 보육품질관리 확인

다.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단가	세 부 사 항
추 가 반 보육교사 인 건 비	1,900천원/인	•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불가)의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
추 가 반 운 영 비	600천원/반	•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퇴직적립금 • 추가반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의 제수당, 사회보험 사용자부담분, 복리후생비 ※ 추가반 보육교사 배치에 따른 비용 우선사용 원칙
야간연장 추 가 반 근무수당	457천원/인	• 야간연장반 0세아 3명 포함 총4명 이상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포함), 야간연장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의 초과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수당 ※ 보건복지부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동일 기준 ※ 야간연장보육 미지정의 경우도 추가반에 한하여 지원 (전산상 추가반 미생성 → 시군확인 후 추가반 지급)
조 리 원 인 건 비	600천원/인	•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단 조리원의 경우,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단,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

  ※ 예) '21년 1월 기준 0세 5명, 1세 8명, 2세7명 재원 중일 경우 0세반 3개반, 1세반 3개반이 구성된 월부터 지원, 2세반 아동은 '22년 2월28일까지 퇴소 완료

  ※ 신규, 임용, 면직의 경우 인건비・운영비는 일할지급 (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 공포함)}}{\text{해당월의 일수}}$)

- 1세・2세 혼합반 구성 시 해당 월부터 1세 추가반 지원중단, 1세반만으로 구성된 월부터 지원 재개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 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야간연장 이용아동이 0세아 3명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0세아가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 가능

라.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

ㅇ 지정취소 : 시장·군수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평가인증 취소사유 외)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세부기준(최근 3년간)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 (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시 인가변동사항 시·군 확인 후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는 유지가능 단, 평가 후 A등급일 경우에만 지정 유지
    * 평가주기 조정에 따른 평가소요 기간 (6개월~1년 내외)
  - · 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가제 D등급 (2020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평가 참고)
  - · 시·군 모니터링 결과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율 50% 미만시
  - · 지원조건 미충족 및 아동 감소 등으로 3월 연속으로 지원 중단된 경우
  -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
- 지정취소 확정 후 도에 결과 보고 및 지정서 회수·폐기하고 시스템 정비
-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제한
  ※ 대표자 변경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취소 시 적용제외
- 취소일이 속하는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월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기준 준수
    ※ 법령위반,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평가 결과 A, B, C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운영포기

-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운영포기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시·군에 제출하고 이후 지정취소와 동일 적용

[붙임 1]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가점	감점	배점 기준 (증빙)
맞춤형 보육지원 (20점)	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	. 70% 이상~	15	80% 이상 +3점	50% 미만 -3점	
		. 65% 이상~70% 미만	11			
		. 65% 미만	8			
	야간연장보육 실시 (5점)	. 지정	5			
		. 미지정	3			
보육교직원 전문성 (15)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5점)	. 10년 이상	5	12년이상 +3점		
		. 5년 이상~10년 미만	3			
		. 5년 미만	1			
	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	. 70% 이상	10	80% 이상 +3점	40% 미만 -3점	
		. 60% 이상~70% 미만	8			
		. 50% 이상~60% 미만	6			
		. 50% 미만	4			
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점)	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점)	. 3건 이상	10	최근 3년 이내 시상 +3점		
		. 2건 이상	7			
		. 1건 이상	5			
운영기간 및 정원충족률 (20점)	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0점)	. 5년 이상	10	7년 이상 +3점		
		. 3년 이상~5년 미만	7			
		. 3년 미만	5			
	정원충족률 * 공고일 전 6개월 평균 * 농어촌지역 50% 기준 (10점)	. 80% 이상~	10	90% 이상 +3점		
		. 75% 이상~80% 미만	7			
		. 70% 이상~75% 미만	5			
건물소유 및 안정성 (20점)	어린이집 소유형태 (10점)	. 자가	10			
		. 임차	7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10점)	. 일치	10			
		. 불일치	0			
시·군 특성화지표 (15점)	산업단지, 신혼부부거주, 영아보육수요, 입소대기 등 * 시·군별 설정 적용 (15점)	. 상	15			
		. 중	10			
		. 하	7			
기타 가점 (+5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 열린어린이집 지정	2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CIS 회계보고 건수	. 9건 이상	5			
		. 6건 이상	3			
		. 3건 이상	1			
합계						

※ 총 합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0세반> <혼합반 : 0세아, 1세아 각 1명시 또는 0세아만 1명 있을시>

아동수	기존 1:3 보육 반 수 (a)	전용 1:2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3명	1	2	1	
4명	2	2	1	
5명	2	3	1	
6명	2	3	1	
7명	3	4	1	
8명	3	4	1	
9명	3	5	2	
10명	4	5	2	
11명	4	6	2	
12명	4	6	2	
13명	5	7	2	
14명	5	7	2	
15명	5	8	3	
16명	6	8	3	
17명	6	9	3	
18명	6	9	3	
19명	7	10	4	
20명	7	10	4	

<1세반> <혼합반 : 1세아만 1명 있을시> <야간연장반 : 0세아 3명 이상시>

아동수	기존 1:5 보육 반 수 (a)	전용 1:3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4명	1	2	1	
5명	1	2	1	
6명	2	2	1	야간연장 추가반의 경우 국비 2명 지원시 미지원
7명	2	2	1	1개반 1:4 허용
8명	2	3	1	
9명	2	3	1	
10명	2	3	1	1개반 1:4 허용

예1)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7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예2)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10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예3) 야간연장반 보육아동이 0세아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0, 1세 형제자매 총 10명인 경우(4명 이상) 반편성 조정(1:5→1:3) 운영하여 1개의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을 지원함

예4)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 야간연장반 0세아 3명 미만인 경우 1:5 반편성하므로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미지원

[붙임 3]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청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입)	최초 인가일	(연/월/일)
대표자 *인가증		전화번호		원장 및 대표자 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재직 여부	☐ 미해당 ☐ 해당 (참여불가)
원장 *경력증명서		FAX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결과 통지서	☐ 신규인증 / ☐ 재인증 / ☐ 재재인증 / ☐ 미인증(참여불가) [인증년도(년), 통과점수 (점)] - ☐ 2차지표 ☐ 3차지표
	☐ 신규인증 / ☐ 재인증 / ☐ 재재인증 / ☐ 미인증(참여불가) [인증년도(년), 등급 (등급)] - ☐ 3차 통합지표
평가 여부 *평가 결과 통지서	☐ A등급 / ☐ B등급 / ☐ C등급 / ☐ D등급 [평가년도(년), 통과점수 (점)]

농어촌특례 및 탄력편성 여부	☐ 미해당 ☐ 해당(중복불가)	정부인건비 지원 및 공공형,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여부	☐ 미해당 ☐ 해당 (참여불가)

건물 소유형태	☐ 자가	☐ 임대(전세) 보증금( )	☐ 임대(월세) 보증금/임대료(/)	현재임대 계약기간 (연/월/일)~ (연/월/일)

야간연장 운영여부	☐ 지정·실시	☐ 미지정·실시	☐ 실시가능

영유아	정원/현원	합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정원	명	명	명	명	명
	현원	명	명	명	명	명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총인원	원장	담임교사	조리원	야간연장 (월급여형)	야간연장 (근무수당형)	특수교사	휴직자 (출산육아)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보육교사 자격	현 어린이집 임용 일자	반
원장	○○○	보육교사 1급	○○○○-○○-○○	없음/○○반(0세반)
담임교사	○○○	보육교사 1급	○○○○-○○-○○	○○반(1세반)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야간연장				
야간연장				
휴직(출산)				

위와 같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어린이집 대표자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서

(앞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서

어린이집명					
보호자 동의율	___%	아동수(현원)	___명	동의 부모 수	___명
담임교사 동의율	___%	담임교사수	___명	동의 담임교사수	___명

❍ 담임교사 동의서

연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성 명	직 위	서명(인)
1	☐ 동의 ☐ 동의하지않음			
2	☐ 동의 ☐ 동의하지않음			
3	☐ 동의 ☐ 동의하지않음			
4	☐ 동의 ☐ 동의하지않음			
5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보호자 동의서

연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여부	아동명	보호자명	맞벌이여부 (입소우선순위 기준)	서명(인)
1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2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3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4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5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6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7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8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9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10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11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12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13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14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15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16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해당 ☐ 미해당	

- 사업참여 동의율 보호자와 보육교사 각각 80% 이상
- 계 산 식 1 = (동의 담임교사 수) / (전체 담임교사 수) * 100
- 계 산 식 2 = (동의 보호자 수) / (재원아동 수) * 100

▸ **보호자, 담임교사 동의 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반드시 필요**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 (야간연장형 교사, 대체교사, 방과후 교사는 제외)

※ 원장이 담임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담임교사 산정에서 제외

▸ 보호자 동의는 부모, 조부모, 보호자 중 1명만 동의해도 모두 동의한 걸로 간주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경기도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경기도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_년 ___월 ___일		
소속	_____어린이집	직위	☐ 대표자 ☐ 원장
어린이집 주소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 명)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정보원장,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5]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서

제　　호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 :

대　표　자 : ○　○　○ (1900년 0월 0일생)

소　재　지 :

위 어린이집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 군수(관인)

1-8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4744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투명한 사용과 올바른 회계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 지원 및 교육운영으로 회계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년도 ~ 계속

ㅇ 사용대상 : 육종센터장·컨설턴트, 관리자(담당공무원), 사용자(어린이집원장)

ㅇ 수행기관 : 도 직접 운영

ㅇ 소요예산 : 31,720천원 (도비 100%, 사무관리비)

ㅇ 사업내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및 맞춤형 교육

- 어린이집 재무·회계 역량강화 및 시스템 사용·활용 전산실습 교육추진

□ 사업 추진 안내

ㅇ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공공성 제고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보육컨설턴트 대상 재무·회계 전문 인력양성 교육
- 투명한 시스템 사용과 올바른 회계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운영·지원

구 분	컨설팅 전문가 양성교육	시스템 관리자 교육	맞춤형 전산교육
교육기간	17회	5회	2회
교육대상	보육컨설턴트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코디네이터
교육과정	3과정 5주제 (재무회계, 시스템, 멘토링)	2과정 4주제 (재무회계, 시스템)	1과정 2주제 (시스템)
교육시간	16시간	5시간	2시간

ㅇ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 및 안정성 강화)

- 시스템 사용자 급증에 따른 맞춤형 전산교육 확대 및 헬프데스크 운영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관리 및 성능 향상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제고

참 고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개요

□ 구성 및 내용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주소 : http://www.accgg.co.kr >

□ 사용 장점

- ○ 모바일 전용 앱(APP) 지원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회계처리 가능
- ○ 계좌 자동연계(펌뱅킹) 구축을 통한 실시간 거래내역 제공
- ○ 어린이집 종이서류(24종)의 전자화로 회계처리의 편리성. 효율성 및 경제성 증대
  - 별도 출력물 없이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전자문서 관리·보존(비치) 가능
- ○ 회계검증기능 구현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보고 전 오류여부 자가 검증 가능
- ○ 시스템 사용료 무료 및 거래실적(통장·카드)에 따른 적립금 매월 지급
- ○ 사용자 맞춤형 전산교육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지원(보육컨설턴트)
- ○ 전화. 온라인 질의상담 운영 강화로 시스템 사용 불편사항 즉각 해소
  - 전문 상담인력 보강(2명→7명) 등 헬프데스크(☎1644-6840) 운영 강화
- ○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3초→0.5초) 및 회계검증기능(사전 오류 확인) 제공
- ○ 보안 취약점 점검·관리 및 성능 향상 등을 통한 시스템의 고도화·안정화

1-9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도비

보육정책팀 ☏8008-4733

○ 지역여건을 감안한 아이사랑 놀이터 확대 설치로 수요자 중심 육아 환경 조성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9 ~ 2021년

ㅇ **사 업 량** : 2021년 6개소 ※남부4(군포,부천,평택,양평) 북부2(의정부,포천)

ㅇ **선정기준** :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미설치 지역, 인구대비 시설부족,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 우선

시군 수요조사 및 선정(도) → 예산지원(도→시군) → 대상지 설치 및 리모델링(시군)

ㅇ **소요예산** : 1,143,000천원(도비 100%)

ㅇ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유휴시설 등을 활용(리모델링)하여 아이사랑놀이터 조성 및 부모육아 지원

* 실내놀이터 이용, 장난감 대여, 놀이지도 및 육아상담 서비스 등 실시

- 지원내용 : 100만원/㎡, 개소당 300㎡(바닥면적 기준)까지 최대 3억원

□ 향후계획

ㅇ 정책목표 : 민선7기내 아이사랑놀이터 110개소 이상으로 확대

- 기설치 현황('20.12월기준) : 30개 시·군, 110개소 ※미설치:동두천('21년 추진예정)

-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아이사랑놀이터 기능 강화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2-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국 · 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2

부모(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 등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 보육환경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등 4개 영역)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

※ 제외대상 : '20년 열린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 시설 등

ㅇ 사 업 량 : 4,378개소

- (전체 10,761개소 - 열린어린이집 2,006개소)의 50% 이상 실시

ㅇ 사업내용

- 점검지표 : 15개 지표(건강 3, 안전 4, 급식 4, 위생 4)
- 점검방법 : 방문일정 사전협의, 1일 1개소 원칙, 급식시간 포함 약 3시간 등
- 구성방법 : 2인 1조(부모 및 전문가 1:1)
- 주요역할 : (부 모) 관찰 비중이 높은 급식·위생관리 영역 점검
  (전문가) 문서· 면담 비중이 높은 건강·안전관리 영역 점검
- 결과보고 : 운영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보고, 영유아 부모에게 공지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935,752	497,000	732,600	706,152
국 비	941,800	248,500	336,300	357,000
도 비	483,937	124,250	183,149	176,538
시군비	480,015	124,250	183,151	172,614

※ 보 조 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향후계획

ㅇ (상반기)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 실시
(하반기) 부모모니터링단 병행 운영 예정 * 복지부 지침 개정 중

※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에 따라 점검방법 변경
- 시군 위촉 부모모니터링단 → 재원 영유아의 부모 및 보육교직원 자체 점검

참고 2021년 부모모니터링 계획(안)

시군	전체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사업량(개소)	소요예산(천원)
계	10,761	2,006	4,378	706,152
수 원 시	982	131	426	68,412
용 인 시	860	48	406	63,785
성 남 시	580	104	238	37,692
부 천 시	559	115	222	38,608
화 성 시	866	99	384	60,783
안 산 시	464	113	176	29,909
안 양 시	421	78	172	28,232
평 택 시	419	100	160	19,620
시 흥 시	484	88	198	32,199
김 포 시	440	66	187	29,757
광 주 시	333	75	129	22,432
광 명 시	244	55	95	16,176
군 포 시	225	39	93	14,649
하 남 시	243	43	100	16,633
오 산 시	252	87	83	13,735
이 천 시	158	30	64	10,072
안 성 시	164	49	58	9,463
의 왕 시	131	37	47	8,088
양 평 군	53	30	12	1,832
여 주 시	73	33	20	3,052
과 천 시	46	8	19	2,900
고 양 시	717	111	303	49,289
남양주시	620	143	239	38,340
파 주 시	408	79	165	27,620
의정부시	403	45	179	28,688
양 주 시	223	54	85	13,735
구 리 시	152	41	56	9,156
포 천 시	94	57	19	3,204
동두천시	84	17	34	5,343
가 평 군	34	13	11	1,832
연 천 군	29	18	6	916

2-2 열린어린이집 지원

비예산

보육기반팀 ☏8008-2542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06개소 * 전체 10,761개소의 18.6%

구분	계	가정	국공립	민간	직장	법인단체등	사회복지법인	협동
열린	2,006	838	633	454	53	16	10	2
전체	10,761	5,717	1,086	3,431	284	112	64	67

○ 지정기간 : ‘20.12.1. ~ ’ 21.10.31.(11개월)

※ 코로나19로 선정 지연되어 지정기간 축소 * 당해연도 11.1.~익년도 10.31.(1년)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선정요건 : 5개 항목

① 공간 개방성 : 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② 참여성 : 부모 개별상담, 부모교육, 부모만족도 조사, 부모 참관 등
③ 지속가능성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정기안내 및 공지 등
④ 다양성 : 부모참여활동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 및 협력활동 등
⑤ 시군 자체 선정기준 등

※ 배점 : 개방성(30점), 참여성(40점), 지속가능성(10점), 다양성(5점), 시군 자체(15점)

○ 지원내용

-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에서 제외(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실태·점검·조사 가능하며, 민원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도·점검 대상임

□ 향후계획

○ ‘20년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7월, 12월)

○ ‘21년 열린어린이집 선정·확정 : ‘21. 10월

2-3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비예산

보육기반팀 ☏8008-2543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를 통해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모든 어린이집

ㅇ 사업내용

- (현원 100인 이상) 영양사 1인 전담 관리(1인 5개 시설 공동관리 가능)
- (현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조리사 배치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현장학습 등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 및 동의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음

□ 향후계획

ㅇ 현원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배치·관리

- 513개소, 영양사 233명(평균 1명 당 2개소 관리, '20.12월말 기준)

ㅇ 현원 100인 미만 시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 등록 시설 9,862개소(식약처 자료, '20.12월말 기준)

ㅇ 하절기 급식·위생 전수점검 실시(7월)

□ 행정사항

ㅇ 시장·군수는 식중독 등 급식관련 사고,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고관리 > 식중독/급식 사고 등록

경기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현황

ㅇ (근　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식약처(도 식품안전과)
ㅇ (설　치) 30개소 * 광명시는 중앙센터에 등록·관리('21년 하반기 개소 예정)
ㅇ (기　능) 센터 등록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2-4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 · 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3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안전용품 장비 등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증개축 등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 보존식 기자재('21년 신규) : 영유아 현원 21 ~ 49인 모든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2,334개소(증개축 등 90, 보존식 기자재 2,244)

※ 보존식 : 조리·제공한 급·간식 1인분 분량(각 100g 이상)을 144시간(6일) 이상 보관

ㅇ 사업내용

구분	단가	지원대상
증개축	최대 184,404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개보수	최대 30,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등
장애아 개보수	최대 30,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등 중 장애아 전문
장비비	최대 2,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 등 * 내용 연수 5년 이상, 단가 5만원 이상 물품
장애아 장비비	20인미만 : 최대 3,000천원 20인이상 : 최대 4,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 등 중 장애아 전문 및 통합
보존식 기자재	최대 700천원	현원 21~49인 모든 시설 * 냉동고 및 보존식 용기 등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9,978,145	14,145,183	3,291,991	2,540,971
국 비	10,123,388	7,178,488	1,655,500	1,289,400
도 비	4,994,534	3,536,296	823,000	635,238
시군비	4,860,223	3,430,399	813,491	616,333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21년 사업비 2,540,971천원(증개축 등 1,089,801, 보존식 기자재 1,451,170)

□ 행정사항

ㅇ 사업대상 및 내용 등 변경사항은 수시 신청·승인(시군 → 도)

참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계획(안)

시군	사업량(개소)				소요예산 (천원)
	계	개보수	장비	보존식	
계	**2,334**	**36**	**54**	**2,244**	**2,540,971**
수원시	204	1	0	203	161,134
용인시	190	1	3	186	149,739
성남시	146	1	4	141	135,374
부천시	148	1	3	144	131,336
화성시	159	1	1	157	134,027
안산시	94	1	0	93	90,215
안양시	73	1	3	69	77,157
평택시	111	1	1	109	94,588
시흥시	93	1	0	92	90,215
파주시	97	2	1	94	81,517
김포시	82	1	0	81	93,396
광주시	65	2	0	63	59,438
광명시	44	1	0	43	86,678
군포시	51	2	1	48	62,093
하남시	44	1	3	40	71,260
오산시	57	1	2	54	63,138
이천시	54	1	4	49	76,967
안성시	30	2	5	23	52,395
의왕시	31	1	2	28	39,367
양평군	15	1	0	14	36,712
여주시	18	1	0	17	33,691
과천시	13	1	1	11	113,286
고양시	130	1	5	124	121,638
남양주시	140	1	3	136	107,426
의정부시	79	1	1	77	80,841
양주시	46	1	3	42	53,493
구리시	34	1	3	30	31,333
포천시	38	2	5	31	92,410
동두천시	26	1	0	25	47,395
가평군	11	1	0	10	36,021

2-5 어린이집 평가

비예산

보육품질관리팀
☏ 8008-4726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11.)으로 '19. 6. 12.부터 의무평가제 시행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제외)

ㅇ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ㅇ 평가과정 : 3단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ㅇ 평가등급 : 4등급 (A, B, C, D)

ㅇ 평가주기 : (A · B등급) 3년, (C · D등급) 2년

□ 연도별 추진실적

ㅇ 평가(인증) 현황

('20. 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

연도별	구 분	전체 어린이집수 (A)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B)	평가인증율(%) (B/A)×100	평가어린이집수 **(C)	평가율(%) (C/A)×100
2018년	경기도	11,682	9,527	81.6	-	-
	전 국	39,171	31,625	80.7	-	-
2019년	경기도	11,305	9,135	80.8	706	6.2
	전 국	37,371	30,061	80.4	2,070	5.5
2020년	경기도	10,761	7,206	67.0	1,702	15.8
	전 국	35,352	23,909	67.6	6,844	19.4

*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연도별 12월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평가 어린이집 수 : '19. 6월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집

ㅇ 평가결과 확정 현황

('20. 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도별	구 분	평가결과확정 어린이집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019년	경기도	706	373	250	63	20
	전 국	2,070	1,090	722	191	67
2020년	경기도	1,702	1,032	5,123	123	34
	전 국	6,844	3,997	2,144	525	178

참 고 시·군별 평가(인증) 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

구 분	전체 어린이집수 (A)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B)	평가인증율 (B/A) × 100	평가 어린이집수**(C)	평가율 (C/A) × 100
경 기 도	**10,761**	**7,206**	**67.0**	**1,702**	**15.8**
수 원 시	982	704	71.7	169	17.2
성 남 시	580	401	69.1	106	18.3
고 양 시	717	460	64.2	105	14.6
부 천 시	559	414	74.1	79	14.1
안 양 시	421	345	81.9	50	11.9
안 산 시	464	296	63.8	96	20.7
용 인 시	860	568	66.0	143	16.6
의정부시	403	260	64.5	63	15.6
남양주시	620	407	65.6	84	13.5
평 택 시	419	252	60.1	51	12.2
광 명 시	244	178	73.0	42	17.2
시 흥 시	484	293	60.5	69	14.3
군 포 시	225	162	72.0	40	17.8
화 성 시	866	528	61.0	154	17.8
파 주 시	408	272	66.7	57	14.0
이 천 시	158	115	72.8	20	12.7
구 리 시	152	114	75.0	22	14.5
김 포 시	440	283	64.3	74	16.8
포 천 시	94	70	74.5	16	17.0
광 주 시	333	202	60.7	65	19.5
안 성 시	164	114	69.5	18	11.0
하 남 시	243	139	57.2	41	16.9
의 왕 시	131	83	63.4	21	16.0
양 주 시	223	146	65.5	35	15.7
오 산 시	252	175	69.4	40	15.9
여 주 시	73	51	69.9	8	11.0
양 평 군	53	42	79.2	5	9.4
동두천시	84	54	64.3	11	13.1
과 천 시	46	33	71.7	6	13.0
가 평 군	34	23	67.6	8	23.5
연 천 군	29	22	75.9	4	13.8

*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20. 9월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평가 어린이집 수 : '19. 6월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 수

2-6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운영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2556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평가 컨설팅 운영·지원 및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한 어린이집 회계투명성·공공성 강화 및 보육품질관리 제고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1월 ~ 계속

ㅇ 사업대상 :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ㅇ 사업주관 : 도,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ㅇ 사업내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 운영 및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추진
-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평가제, 보육과정 등) 운영 및 교육추진
  · (사전) 평가절차·방법, 지표교육, (사후) 한국보육진흥원 '지역자원가' 참여
- 경기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교육 참여

□ 운영방향

ㅇ (재무·회계 컨설팅 신설) 재무·회계실무, 시스템 전산실습, 1:1 컨설팅 지원

- 교육내용 : 재무·회계이론 및 어린이집 회계실무 운영, 시스템 전산실습
- 운영방법 : 어린이집 1:1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추진

ㅇ (평가 컨설팅 축소) (기존) 사전·합동·추가·사후 → (변경) 사전·사후

□ 운영체계

ㅇ 기관별 역할 및 기능

- (경기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운영·집행기준 마련, 사업비 교부, 어린이집과의 컨설팅 연계, 사업 홍보
- (시·군) 사업운영 세부계획서 및 예산·집행 승인, 사업운영 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정산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컨설턴트 채용·운영 전반, 재무·회계 및 평가 컨설팅 운영 세부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집행관리

※ 도 센터(2개소, 경기도·경기북부)의 역할 및 기능은 추후 검토하여 통보 예정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의 역할 및 업무

>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
> 1.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2.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평가제, 보육과정) 및 교육 업무
> 3.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 4.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업무

□ 운영기준

○ 컨설턴트 채용기준

- (무기계약)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신규채용 시 무기계약직 채용원칙

※ 다만, 인력운영은 육종센터장 권한사항으로 계약직(24개월 이내) 채용 후 자체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하여 채용할 수 있음

- (급여기준) 무기계약직 봉급표 '1~10호봉' (일반직공무원 8급 기준적용)

※ 시·군별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내(1~10호봉)"에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신규 채용 시에는 6호봉 이하로 적용함

○ 사업비 집행기준

- (인건비) 기본급, 수당(정액수당, 기타수당 등),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별 조정 집행할 수 있음(단,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외)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액 2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운영비) 여비, 교재·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 등

※ 운영비를 '자산물품취득비 및 시설개선비'로 사용 불가

- 다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소액물품구입은 가능하며, 50만원 이상의 물품 필요 시 '임차'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35명	2,072,320	1,094,560	977,760	
道 육종센터	2명	116,800	116,8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 100%)
시·군 육종센터	33명	1,955,520	977,760	977,760	민간위탁금 (도 50%, 시·군 50%)

□ 세부추진계획

ㅇ 어린이집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 운영·지원

- 어린이집 대상 투명한 시스템 사용 및 올바른 회계운영 컨설팅 추진

ㅇ 어린이집 재무·회계 역량강화 및 시스템 전산실습 교육 직접 운영

- 교육내용 : 재무·회계이론 및 어린이집 회계실무 운영, 시스템 전산실습
- 운영방법 : 어린이집 1:1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추진

ㅇ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평가제, 보육과정 등) 운영 및 교육추진

- (사전) 평가절차·방법, 지표교육, (사후) 한국보육진흥원 '지역자원가' 참여

ㅇ 무기계약직 전환·운영을 통한 어린이집 전문 컨설팅 지속 지원

ㅇ 경기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교육 참여

<어린이집 대상 전문 컨설팅 운영 및 맞춤형 교육>

구분	재무·회계 및 평가 컨설팅 운영	재무·회계 및 평가 교육	컨설팅 전문가 양성교육
주관	보육컨설턴트	보육컨설턴트	경기도 (직접운영)
횟수	수시	수시	17회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센터장, 컨설턴트
과정	• 재무·회계 컨설팅 • 사전·사후 평가 컨설팅	소그룹 교육 등 직접 추진 (재무·회계, 시스템 및 평가)	3과정 5주제 (재무·회계, 시스템, 멘토링)
시간	-	-	16시간

※ 보육코디네이터 지원, 시스템 초기사용자 대상 소그룹 방문 전산실습 교육지원(수시)

참고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

(단위 : 개소, 명)

시.군명	어린이집 수 ('20. 9월말)	'20년 운영현황			'21년 운영계획		비 고
		개소 수	배치인원	운용방식	개소 수	배치인원	
합 계	**10,809**	**30**	**32**	**무기계약 14, 기간제 18**	**33**	**35**	
소 계	**8,029**	**21**	**23**	**무기계약 11, 기간제 12**	**23**	**25**	
道(남부)	-	1	1	기간제계약직	1	1	
수 원 시	991	1	1	기간제계약직	1	1	700개소 이상 1명 추가
		1	1	(동부) 무기계약직	1	1	
성 남 시	584	1	1	기간제계약직	1	1	
용 인 시	871	1	2	무기계약직	1	2	700개소 이상 1명 추가
부 천 시	565	1	1	무기계약직	1	1	
안 산 시	464	1	1	무기계약직	1	1	
안 양 시	422	1	1	기간제계약직	1	1	
화 성 시	868	1	2	무기계약 1, 기간제 1	1	2	700개소 이상 1명 추가
평 택 시	420	1	1	기간제계약직	1	1	
시 흥 시	475	1	1	무기계약직	1	1	
광 명 시	247	1	1	기간제계약직	1	1	
김 포 시	440	1	1	무기계약직	1	1	
군 포 시	227	1	1	무기계약직	1	1	
광 주 시	336	1	1	기간제계약직	1	1	
이 천 시	158	1	1	기간제계약직	1	1	
오 산 시	254	1	1	무기계약직	1	1	
안 성 시	164	-	-	-	1	1	'21. 3월 신규개소 예정
의 왕 시	133	1	1	무기계약직	1	1	
하 남 시	243	1	1	기간제계약직	1	1	
여 주 시	70	1	1	기간제계약직	1	1	
양 평 군	52	-	-	-	1	1	'21. 6월 신규개소 예정
과 천 시	45	1	1	기간제계약직	1	1	
소 계	**2,780**	**9**	**9**	**무기계약 3, 기간제 6**	**10**	**10**	
道(북부)	-	1	1	기간제계약직	1	1	
고 양 시	720	1	2	기간제계약직	1	2	700개소 이상 1명 추가
남양주시	621	1	1	기간제계약직	1	1	
의정부시	408	1	1	무기계약직	1	1	
파 주 시	412	1	1	기간제계약직	1	1	
양 주 시	224	1	1	기간제계약직	1	1	
구 리 시	152	1	1	무기계약직	1	1	
포 천 시	95	1	1	무기계약직	1	1	
동두천시	84	-	-	- (미 참여)	1	-	'21. 9월 신규개소 예정
가 평 군	35	1	-	-	1	1	'21. 1월 배치 예정
연 천 군	29	-	-	- (미 설치)	-	-	道 북부센터 운영

2-7 경기도 어린이집 온라인 조사 신규 추진 비예산

보육컨설팅팀 ☎8008-2596

어린이집 조사방식을 현지 조사에서 **온라인 조사를 신규 도입하여 현지 조사와 병행추진으로 어린이집 부담 최소화**와 **조사 효과의 극대화**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추진계획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온라인 조사 도입으로 어린이집 부담 완화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전자문서 및 회계증빙 등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와 현지 조사 병행 추진

⇒ **온라인 조사 제도화로 어린이집 부담 최소화, 조사효과 극대화**

점검	내 용				2021년
정기	대상	도내 어린이집	방법	시·군 자체 추진(시·군)	온라인 조사 + 현지조사
수시		민원제보, 언론보도 어린이집		불시 조사 추진(시·군)	기존 방식 유지
특별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이슈 어린이집		합동조사(복지부·도·시·군·구)	

□ 사업 추진 안내

○ **(상반기)** 온라인 조사 매뉴얼 개발 및 업무프로세스 구축
- 「온라인 조사 체계 구축 추진단」 구성·운영
- 시스템 사용 관련 시·군 담당자 불편·개선사항 등 의견 취합
- 시·군 담당자 온라인 조사 매뉴얼 교육

○ **(하반기)** 온라인 조사 신규 도입하여 온라인·현지 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 사항 등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지속 보완 수정 추진

※ 중복점검 지양 : 정기조사 실시 전 특별(기획)· 수시 조사를 할 경우, 정기조사 일정을 앞당겨 운영 전반 실시, 정기조사 후 특별(기획)·수시 조사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만 실시

2-8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4715

어린이집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사업시행 : 2017년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9,969개소

ㅇ 지 원 액
- 가정·협동어린이집 : 월 15만원
- 그 외 어린이집 : 월 10만원

ㅇ 총사업비 : 15,46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969	15,462,000	-	3,625,740	11,836,26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4,621,190	14,374,800	14,784,390	15,462,000
도 비	10,494,336	3,371,220	3,497,376	3,625,740
시군비	34,126,854	11,003,580	11,287,014	11,836,26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방법 및 내용

ㅇ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 지급일로 함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ㅇ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렌탈비 예산지급액 범위내 월별 지급 가능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기밥솥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으로 영아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 제외

· A4용지, 토너 등 소모품은 가능하나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어린이집 자산취득성 물품 제외(※ 월 지원액 범위 내 집행 원칙으로 할부 등으로도 구입 불가)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사 학습, 및 연구활동(서적구입 등), 교육, 전문가 자문 등 경비

· 학습활동과 무관한 경비(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교통비 등) 제외

· 정부 지원받는 교육은 제외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소화설비 등 재난대비 물품, 차량안전설비 등 보호장구, 기타 아동안전을 위한 물품으로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의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료는 가능하나 안전공제회,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가입에 따른 보험(공제)료 제외

ㅇ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전체 영아반의 아동 현원이 1인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월중에 한명도 없게 된 경우에는 익월부터 미지원

- 2~3세 혼합반일 경우 미지원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또는 평가제 A,B,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B,C등급) 어린이집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이 공표된 날의 익월부터 지원대상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 부터 미지원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미지급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미지급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② 총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③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어린이집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 제외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ㅇ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ex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경우 전액 환수

ㅇ 지원요건 ②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프로그램 지원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ㅇ 지원요건 ③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ㅇ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ㅇ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어린이집에서는 교재교구 구입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미 증빙 집행액 또는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액을 전액 환수

라. 지원 제외

ㅇ 지원연도 2년 이내에(2018년 1월 1일 이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등에 따른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2-9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4715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이상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에 조리원 별도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사업시행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6,823명

ㅇ 지원내용 : 월 300천원 / 1인 / 1개소

ㅇ 사 업 비 : 24,56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823	24,562,800	-	5,310,000	19,252,80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71,974,800	23,799,600	23,612,400	24,562,800
도 비	15,717,240	5,203,800	5,203,440	5,310,000
시군비	56,257,560	18,595,800	18,408,960	19,252,800

□ 사업 추진 안내

ㅇ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 평가등급 공표일의 익월부터 지원

※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국·도비 조리원 인건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기준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조리원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리원은 어린이집에서 조리, 급식 및 위생 관련업무 수행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times\frac{\text{근무일수(토, 공포함)}}{\text{해당월의 일수}}$)

- 지원 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평가제 D등급 이하 등으로 지원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2-1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

보육기반팀 ☏8008-4732

실내 활동이 증가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10,761개소('20.12월말 기준)

- 공기청정기 49,733대(개소별 평균 4~5대)

ㅇ 사업내용 :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공기청정기 1대 지원

ㅇ 지원단가 :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

- 렌탈비 : 1대당 월 최대 11천원(연 132천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9,287,812	6,570,828	6,152,255	6,564,729
도 비	5,786,342	1,971,248	1,845,676	1,969,418
시군비	13,501,470	4,599,580	4,306,579	4,595,311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70% / '17년부터 지원

□ 행정사항

ㅇ (지원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육실(공동놀이실) 확인

※ 예) 보육실 5실 등록 ⇒ 공기청정기 최대 5대 내에서 신청 가능

ㅇ (지원시기)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

- 어린이집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ㅇ (지원중단) 공기청정기 설치기준 위반 및 허위신청, 임의로 변경하여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조치

참고 2021년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안)

시군	어린이집 ('20.12월)	소요예산(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10,761**	**6,564,729**	**1,969,418**	**4,595,311**
수 원 시	982	526,944	158,083	368,861
용 인 시	860	561,455	168,437	393,018
성 남 시	580	287,328	86,198	201,130
부 천 시	559	357,390	107,217	250,173
화 성 시	866	492,115	147,635	344,480
안 산 시	464	308,880	92,664	216,216
안 양 시	421	278,520	83,556	194,964
평 택 시	419	296,100	88,830	207,270
시 흥 시	484	306,900	92,070	214,830
김 포 시	440	205,762	61,728	144,034
광 주 시	333	265,320	79,596	185,724
광 명 시	244	128,066	38,420	89,646
군 포 시	225	126,403	37,921	88,482
하 남 시	243	161,040	48,312	112,728
오 산 시	252	168,300	50,490	117,810
이 천 시	158	101,376	30,413	70,963
안 성 시	164	85,668	25,700	59,968
의 왕 시	131	95,040	28,512	66,528
양 평 군	53	33,660	10,098	23,562
여 주 시	73	48,840	14,652	34,188
과 천 시	46	41,580	12,474	29,106
고 양 시	717	396,000	118,800	277,200
남양주시	620	396,634	118,990	277,644
파 주 시	408	271,260	81,378	189,882
의정부시	403	267,960	80,388	187,572
양 주 시	223	134,550	40,365	94,185
구 리 시	152	80,784	24,235	56,549
포 천 시	94	54,150	16,245	37,905
동두천시	84	48,160	14,448	33,712
가 평 군	34	19,404	5,821	13,583
연 천 군	29	19,140	5,742	13,398

2-11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인력 배치 도비

보육정책팀 ☏8008-4720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지원인력(놀이지도사, 장애위험영유아상담지원인력)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균형적인 발달을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30개소(도1, 시군29)

ㅇ 사 업 량 : 58명(놀이지도사 29, 장애위험영유아상담지원 29)

ㅇ 총사업비 : 2,368,000천원(도비50%,시군비50%)

구분	사업량(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8**	**2,368,000**		**1,184,000**	**1,184000**	
놀이지도사	29	1,160,000		580,000	580,000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	29	1,208,000		604,000	604,000	

ㅇ 사업내용

- 놀이지도사 : 관내아이사랑 놀이터 등 순회하며 이용하는 부모 및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놀이방법 지도 및 놀이프로그램 등 지원
-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치료연계, 교사·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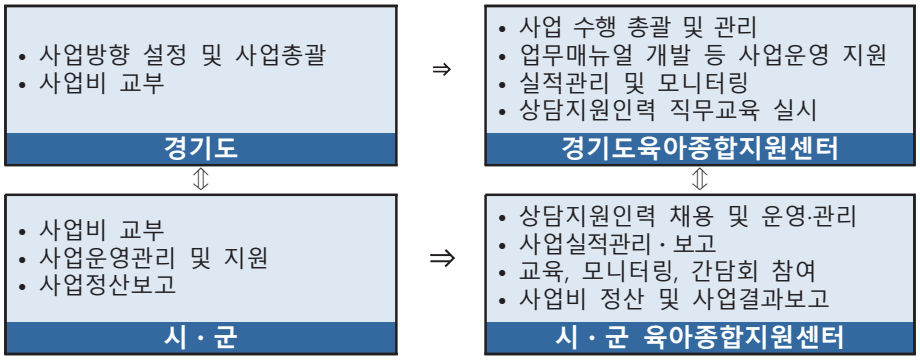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3-1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보육부담 완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연 혁

ㅇ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확대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ㅇ 사 업 량 : 180,537명

ㅇ 총사업비 : 1,374,311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구분	사업량(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80,537	1,374,311,449	982,449,000	240,504,505	151,357,944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4,376,542,407	1,532,521,596	1,469,709,362	1,374,311,449
국 비	3,107,819,800	1,074,928,800	1,050,442,000	982,449,000
도 비	765,894,926	268,191,279	257,199,142	240,504,505
시군비	502,827,681	189,401,517	162,068,220	151,357,944

□ 2021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ㅇ 일반아동

- 적용 기간 : 2021.1.1.~

(단위 : 원/월)

구분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84,000	528,000	(0~2세반)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로 지원
1세반	426,000	287,000	
2세반	353,000	194,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ㅇ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종일	502,000	587,000	'20년 대비 부모보육료 2.9%, 기관보육료 5.5% 인상
방과후	251,000	500,000	

ㅇ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 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ㅇ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3,200	4,200	'20년 대비 동결

3-2 누리과정 운영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연 혁

ㅇ 2012년 3월 만 5세, 2013년 3월 만 3~4세 확대도입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ㅇ 사 업 량 : 160,414명

ㅇ 사 업 비 : 621,258백만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금 100%)

ㅇ 지원내용 : 330천원/인, 월

- 3~5세 보육료 : 260천원/인, 월('21.3월부터 적용)

  ※ 2021년 3월부터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만원 증액

- 누리과정 운영비(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 70천원/인,월

  ※ 기존 운영비 외 처우개선비 6만원 및 운영비 8,140원 추가 지원

ㅇ 총사업비 : 621,258백만원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60,414	621,258,128	-	621,258,128	-	

□ 연도별 예산내역(도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예산액	1,791,315,550	560,734,320	609,323,102	621,258,128	

□ 사업 추진 안내

ㅇ 보육료 : 만3~5세 아동 1인당 260천원/월

ㅇ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70천원/인,월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60천원) 포함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40천원 지원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4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0천원)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만3~5세 외국국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 추가 지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 도(시·군)에서는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단,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 사용은 제한

3-3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연 혁

ㅇ 2012년 1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ㅇ 사 업 량 : 36명

ㅇ 지원내용 : 월 100천원/인

ㅇ 총사업비 : 50백만원(교부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교부금	도비	시군비	
계	36	50,400	35,700	8,820	5,88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65,353	64,553	50,400	50,400
교부금	108,581	37,181	35,700	35,700
도 비	34,408	16,768	8,820	8,820
시군비	22,364	10,604	5,880	5,880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단가

구분	차상위이하 아동	장애아동
예산과목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월 100	251
방학중 종일제 보육	월 200	502

※ 방학중 종일제 보육료 결제 중 50%는 보조금으로 지원, 보조금 신청 시기는 보육통합시스템상 매년 별도 통보

○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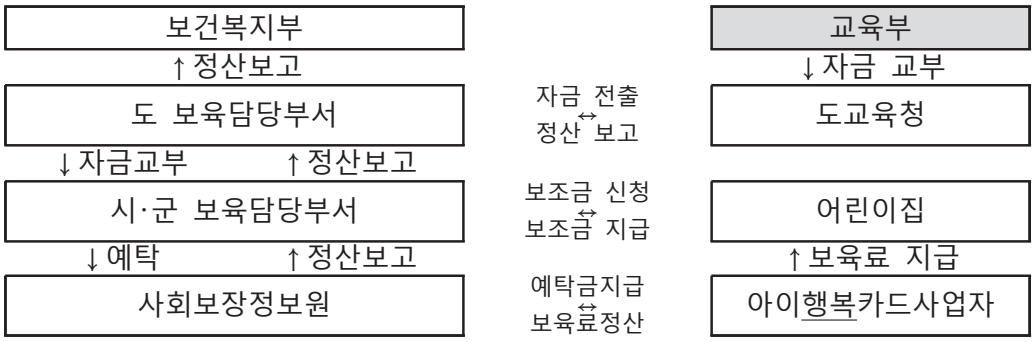

3-4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ㅇ 2012년 3월 최초 시행
- ㅇ 2013년 3월 3~4세까지 확대
- ㅇ 2018년 3월 누리과정 및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통합
- ㅇ 2018년 3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2021년 보육사업안내 p329((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과 동일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지원대상 관련사항 보육통합시스템(시·군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 활용

ㅇ 사 업 량 : 111,099명

ㅇ 지원기준 : 민간3세 93천원, 민간4,5세 70천원, 가정3~5세 9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민간(3세)	민간(4,5세)	가정(3~5세)
수납한도액	353	330	356
정부지원 보육료	260	260	260
누리차액보육료지원금	**93**	**70**	**96**
부모부담보육료	-	-	-

ㅇ 총사업비 : 100,32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11,099	100,324,500	-	24,874,932	75,449,568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98,610,901	95,077,209	103,209,192	100,324,500
도 비	73,669,625	23,178,794	25,615,899	24,874,932
시군비	224,941,276	71,898,415	77,593,293	75,449,568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방식

-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 승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 차액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차액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구간으로 구분
  - · 출석일수가 1~ 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25%
  -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50%
  -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100%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시 입소일이 신청일

3-5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 ·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연 혁

ㅇ 2009년 7월 최초 시행,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취학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ㅇ 사 업 량 : 186,095명

ㅇ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36 ~ 47		129천원	100천원
48 ~ 86		100천원	

ㅇ 총사업비 : 330,469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구분	사업량(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86,095	330,468,686	235,714,000	57,832,021	36,922,665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039,165,217	361,312,871	347,383,660	330,468,686
국 비	737,002,000	252,967,000	248,321,000	235,714,000
도 비	181,853,913	63,229,752	60,792,140	57,832,021
시군비	120,309,304	45,116,119	38,270,520	36,922,665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아님)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36 ~ 47		129천원	100천원
48 ~ 86		100천원	

다. 지원기간

○ 시·군이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ㅇ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라.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마. 지급 방식

ㅇ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ㅇ 시장·군수가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바. 출생아 소급지원

ㅇ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 청구의 소 등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2.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 (예시) '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20.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20.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20.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요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함

ㅇ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한 경우, 실제 양육 및 출생신고 여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중복수급 여부, 타 지자체 전출 여부 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조치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시·군 담당과 (자격결정)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
↓	↓
시·군 담당과 (지급결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 15일)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
↓	↓
시·군 담당과 (지급처리)	e-호조를 통해 회계부서에 지급 의뢰 계좌 유효성 확인 후 지급(담당과)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은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시기 및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에서 서면(우편) 고지

·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시기 및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에서 서면(우편) 고지

3-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2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06년 ~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단,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93개소 95명

ㅇ 지원내용 :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전담3인, 통합1인)

- 교사 인건비 : 월 1,800천원 / 인

ㅇ 총사업비 : 2,05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5	2,052,000	-	438,480	1,613,52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745,600	1,641,600	2,052,000	2,052,000
도 비	1,211,760	334,800	438,480	438,480
시군비	4,533,840	1,306,800	1,613,520	1,613,52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기준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어린이집
저소득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전담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국내아동과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당 3인까지 지원** - 보육교사 배치 기준에 따른 반 당 교사 1인 - **현원기준 0세반 2명, 1세반 3명, 2세 이상 반 50% 이상일 경우 또는 보육교사 배치 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 보육인원이 1~ 5명 : 보육교사 1인 · 보육인원이 6~10명 : 보육교사 2인 · 보육인원이 11명이상 : 보육교사 3인 ※ 아동이 위의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월의 익월까지 지원	◈ **어린이집 당 1인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인원이 3명 (연령에 관계없이)이상일 경우 ※ 아동이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월의 익월까지 지원

나. 지원시점

ㅇ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보육교사 적정배치, 어린이집인가 등)을 갖추어 운영하는 월의 익월부터

다. 운영기준

ㅇ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이상 감면하도록 행정 권고

※ 단, 보육아동이 적은 경우 감면 총액이 월 지원(보조)액인 180만원을 초과 권고

ㅇ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 관리카드(아동명, 연령, 주소, 국적, 보호자 성명 및 직장명, 전화번호, 입·퇴소 시간, 아동사진 등) 작성 비치

라. 지정취소

ㅇ 시장·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사업량내 대체지정 불가)

- 영유아보육법령 및 관련 지침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시정명령의 경우(최근 3년간) 1회위반 경고, 2회위반 지정취소
-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개월 연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3-7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2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야간 연장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07년 ~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1,903개소

ㅇ 지원내용 : 운영비 월 400천원 보조

ㅇ 총사업비 : 9,13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903	9,134,400	-	2,376,960	6,757,44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7,067,200	8,966,400	8,966,400	9,134,400
도 비	7,046,880	2,332,800	2,337,120	2,376,960
시군비	20,020,320	6,633,600	6,629,280	6,757,440

□ 사업 추진 안내

ㅇ 별도의 야간연장 보육교사 또는 수당형 보육교사[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

ㅇ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국비)가 지급되는 달만 운영비 지급
※ 일할계산 불요, 정액 지급

ㅇ 운영비는 야간연장 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으로 활용

3-8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2

차량기사의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21개소

ㅇ 지 원 액

- 운전기사 인건비 : 월 150만원 ※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채용시
- 교재교구비 : 연 200만원

ㅇ 총사업비 : 34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1	348,000	-	87,600	260,40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008,000	330,000	330,000	348,000
도 비	261,200	87,800	85,800	87,600
시군비	746,800	242,200	244,200	260,4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나. 지원요건

ㅇ 공통사항

- 시장 · 군수가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 보육

ㅇ 운전기사 지원요건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등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준수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제51~53조)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운영자 ·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

다. 지급기준

ㅇ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 시 지원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ㅇ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라. 제외대상

ㅇ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ㅇ 운전기사 인건비 제외대상

-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시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지원시 환수조치), 시정 등 완료시 익월부터 지원

마. 지원중단

ㅇ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혹은 통학차량 미운영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3-9 시간제보육 지원

국 · 도비

보육지원팀 ☎8008-4715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긴급·비상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연 혁

ㅇ 사업시행 : 2013년(경기도 2014년) ~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 영아

ㅇ 사 업 량 : 195반(남부 143, 북부 52)

ㅇ 지원내용 : 시간제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구 분	제공기관
대 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관련시설
인건비	**보육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3,000원) + 부모부담금 25%(1,000원)] (월 80시간 이용 가능)
주요역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1개반 기준) 인건비·운영비 10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시
인건비·운영비 70%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모두 충족시

구 분	관 리 기 관
대 상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4명, 북부2명)
인건비	(관리자)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 3. 1.부터 적용
운영비	월 95만원(남부), 60만원(북부)
주요역할	상담, 예약 및 모니터링 등 지원.관리
비고	2017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총사업비 : 9,20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가독서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시간제 제공기관	195개반	9,065,057	4,588,313	2,266,273	2,210,471	
시간제 관리기관	2개소3명	119,374	59,687	59,687		국50%:도50%
시간제 인프라구축	1개소	20,000	10,000	5,000	5,00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7,315,026	3,269,315	4,841,280	9,204,431
국 비	8,779,500	1,665,500	2,456,000	4,658,000
도 비	4,386,859	817,329	1,238,570	2,330,960
시군비	4,148,667	786,486	1,146,710	2,215,471

□ 사업 추진 안내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 '보육 관련 시설'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

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관리 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 보육교사(담임교사)	
채용·관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조건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경력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담당업무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인정 및 승급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조건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업무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 ○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 ○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교사 채용 및 관리 ○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비고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2015. 1. 1.~)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 지원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단, 개시 1년 미만 제공기관은 사업 개시 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반 등록 기준
*** 이용실적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3.1일부터 적용 **(운영비 지원내용)**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마. 운영 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 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ㅇ (정원기준) 기본보육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ㅇ (교사 대 영아비율) 1:3

※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

3) 운영시간

ㅇ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 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

4)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 양육수당 신청시 시간제보육 이용권 지급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3-10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2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제고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 연 혁

ㅇ 사업시행 : 2019년 7월 ~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급식비 :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운영비 :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 기본보육 이용 아동에 한해 지원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기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연장보육· 야간연장 등 이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ㅇ 사 업 량 : 373,544명(정부미지원 310,306명 / 정부지원·공공형 63,238명)

ㅇ 지원내용 :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2,600원/인·월

ㅇ 사 업 비 : 42,85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급식비	운영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373,544	310,306	42,852,254	12,855,676	29,996,578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04,498,226	18,793,718	42,852,254	42,852,254
도 비	32,423,102	6,711,750	12,855,676	12,855,676
시군비	72,075,124	12,081,968	29,996,578	29,996,578

□ 사업 추진 안내

ㅇ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예) 5월 3일(월), 8월 2일(월)]. 단, 1월은 '20.12.31까지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최종 현황 반영을 위해 1.5(화), 3월은 신학기 전환에 따른 보다 정확한 아동 현원 반영을 위하여 3.8(월) 기준

  ** 어린이집 미신청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소급 지원 가능

ㅇ 급식비 지원(아동 1인당, 1일, 20.3월부터 적용)

- 영아(0~2세) : 2,470원(정산 기준 2,270원)

  * 1,900원(정부지원 급식비)+370원(어린이집 운영지원)+200원(건강과일 공급사업, 현물)

- 유아(3~5세) : 3,070원(정산 기준 2,870원)

  * 2,500원(정부지원 급식비)+370원(어린이집 운영지원)+200원(건강과일 공급사업, 현물)

ㅇ 집행내용

- 급식비 :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재료비 지원

-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ㅇ 집행기준

- 급·간식 재료비의 최저기준 적용

  •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서 정한 최저기준 금액(아동당 일370원, 월7,400원)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재원아동이 아닌 실제 출석아동을 기준으로 최저기준을 초과 지출하는 것을 권장함 *** 초과지출은 최종 급식비 지원예산 범위내 가능**

- 출석아동 감소에 따른 급·간식 재료비 절감분의 사용

  • 출석아동 감소(코로나19 관련 휴원 포함)로 인해 발생되는 급·간식 재료비 절감분은 **당해연도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은 급·간식 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 운영비, 인건비, 보육활동비 등 급간식 재료비 이외 다른 항목으로 사용 불가**

  **** 코로나19 상황 해지이후에도 급·간식비 이월 사용 가능**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교부)기준

  • 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으로 출석아동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 : 현원 100명 / 긴급보육 30명일 경우 30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월 현원 기준 으로 미지원된 아동수의 급식비를 추가로 교부 가능

  ※ **매월 1일 현원기준**(주말 · 공휴일은 익일 기준). 다만, **1월은** '20.12.31까지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최종 현황 반영을 위해 **1.5(화), 3월은** 신학기 전환에 따른 보다 정확한 아동 현원 반영을 위하여 **3.8(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지원 아동 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 후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급식비와 운영비 각각 입금
- (집행) 보조금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
- (정산) 급식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시군 자율 정산

○ 지원제외

- (급식비, 운영비)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 (운영비) ①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중**인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자격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② '20.12.31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어린이집

  ※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명단은 관련 팀(보육품질관리팀)에서 추후 별도 시달

3-11 교재교구비 지원

국 · 도비

보육기반팀 ☏8008-4732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20년말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제외 ①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② 정원충족률이 85%이상 어린이집(단,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과 상관없이 우선지원)

○ 사 업 량 : 8,722개소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놀이, 미술, 언어,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연 평균 100만원

※ 시군에서 예산범위, 지원시점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 감안하여 조정 지원 가능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5,499,026	5,482,440	5,050,394	4,966,192
국 비	8,731,560	3,035,560	2,871,000	2,825,000
도 비	4,191,547	1,500,282	1,356,574	1,334,691
시군비	2,575,919	946,598	822,820	806,501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지원기준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액 전액 환수

참고 2021년 교재교구비 지원 계획(안)

시군	전체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고용보험기금 지원받는시설	사업량 (개소)	소요예산 (천원)
계	**10,761**	**8,751**	**29**	**8,722**	**4,643,952**
수 원 시	982	861	-	861	458,432
용 인 시	860	698	7	691	367,917
성 남 시	580	494	3	491	261,429
부 천 시	559	488	-	488	259,831
화 성 시	866	672	-	672	357,800
안 산 시	464	382	-	382	203,393
안 양 시	421	392	-	392	208,717
평 택 시	419	293	3	290	154,408
시 흥 시	484	355	3	352	187,419
김 포 시	440	352	-	352	187,419
광 주 시	333	258	1	257	136,837
광 명 시	244	219	-	219	116,605
군 포 시	225	201	-	201	107,021
하 남 시	243	173	-	173	92,112
오 산 시	252	211	4	207	110,215
이 천 시	158	133	-	133	70,815
안 성 시	164	130	-	130	69,217
의 왕 시	131	103	-	103	54,841
양 평 군	53	47	-	47	25,025
여 주 시	73	58	-	58	30,882
과 천 시	46	38	1	37	19,700
고 양 시	717	552	6	546	290,713
남양주시	620	481	-	481	256,104
파 주 시	408	322	-	322	171,446
의정부시	403	320	-	320	170,381
양 주 시	223	179	1	178	94,775
구 리 시	152	135	-	135	71,880
포 천 시	94	86	-	86	45,790
동두천시	84	63	-	63	33,544
가 평 군	34	30	-	30	15,973
연 천 군	29	25	-	25	13,311

3-12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국 · 도비

보육기반팀 ☎8008-4732

보육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ㅇ 사 업 량 : 40개소

ㅇ 지원내용 : 냉난방비, 공과금,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

ㅇ 지원기준 : 개소당 월 200~280천원

-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 정원충족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익월 지원

※ 운영비 지원단가 (단위 : 천원 / 월)

정원구분	60인 이하	61~80인	81~100인	101~120인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 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321,866	107,946	107,985	105,935
국 비	174,632	57,632	59,000	58,000
도 비	85,277	28,787	28,498	27,992
시군비	61,957	21,527	20,487	19,943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ㅇ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ㅇ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허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액 전액 환수

참고 2021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계획(안)

연번	시군	사업량	소요예산(천원)	어린이집명	정원
계	**14개 시군**	**40**	**99,147**		**3,591**
1	수 원 시	1	2,479	경동	45
2	용 인 시	4	9,914	경기	279
3				모현	99
4				세움	57
5				양지	72
6	화 성 시	7	17,351	발안	95
7				비봉	64
8				사회복지법인조암	99
9				샛별	79
10				송림	92
11				송산	98
12				정남	137
13	김 포 시	7	17,351	고촌	81
14				늘푸른	99
15				마조	73
16				벧엘	99
17				월곶	80
18				전원	99
19				통진	108
20	광 주 시	1	2,479	햇빛	58
21	안 성 시	3	7,436	나라	95
22				새동그라미	60
23				푸른나무	70
24	의 왕 시	4	9,914	거봉	94
25				다솜	126
26				의왕	156
27				지구촌	99
28	양 평 군	1	2,479	미지	51
29	고 양 시	2	4,957	고려	88
30				희망	78
31	남양주시	3	7,436	법인 진달래	48
32				사회복지법인양정	72
33				신성	99
34	파 주 시	4	9,914	광탄	70
35				금곡	65
36				에벤에셀	129
37				진인	70
38	동두천시	1	2,479	해오름	49
39	가 평 군	1	2,479	보람	74
40	연 천 군	1	2,479	임진	85

3-13 차량운영비 지원

국 · 도비

보육기반팀 ☏8008-4732

농어촌소재,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장애영유아 통학 편의 증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1,299개소, 1,929대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1,283개소, 1,906대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6개소, 23대

ㅇ 사업내용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지원

ㅇ 지원기준 : 차량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ㅇ 지원방법 : 반기별로 분할 지원

※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1,758,049	2,337,905	4,648,664	4,771,480
국 비	6,509,762	1,268,762	2,591,000	2,650,000
도 비	3,096,787	617,986	1,220,750	1,258,051
시군비	2,151,500	451,157	836,914	863,429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ㅇ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ㅇ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해 차량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액 전액 환수

참고 2021년 차량운영비 지원 계획(안)

시군	농어촌소재	장애아전문	사업량(대)	소요예산(천원)
계	**1,906**	**23**	**1,929**	**4,564,966**
수 원 시	1	-	1	2,366
용 인 시	228	2	230	544,294
성 남 시	-	-	-	-
부 천 시	-	2	2	4,733
화 성 시	136	1	137	324,210
안 산 시	3	4	7	16,565
안 양 시	-	1	1	2,366
평 택 시	138	-	138	326,576
시 흥 시	-	2	2	4,733
김 포 시	35	-	35	82,827
광 주 시	229	1	230	544,294
광 명 시	-	-	-	-
군 포 시	-	-	-	-
하 남 시	1	-	1	2,366
오 산 시	-	1	1	2,366
이 천 시	122	1	123	291,079
안 성 시	126	3	129	305,278
의 왕 시	13	-	13	30,764
양 평 군	60	-	60	141,990
여 주 시	51	-	51	120,691
과 천 시	-	-	-	-
고 양 시	63	1	64	151,456
남양주시	304	-	304	719,414
파 주 시	155	-	155	366,807
의정부시	-	-	-	-
양 주 시	81	2	83	196,419
구 리 시	-	-	-	-
포 천 시	86	1	87	205,885
동두천시	12	1	13	30,764
가 평 군	36	-	36	85,194
연 천 군	26	-	26	61,529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4-1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00년(정부지원), 2003년(정부미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원장·조리원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장애아전문·통합 및 일반 어린이집 치료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ㅇ 사 업 량 : 60,461명

ㅇ 지원내용

구 분		평가인증(평가제 A, B, C) 어린이집	미인증(평가제 D) 어린이집
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50천원/인	월120천원/인
	원장, 조리원		
	치료사	월400천원/인	월370천원/인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200천원/인	월170천원/인
	치료사	월450천원/인	월42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 60천원/인

ㅇ 총사업비 : 117,90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60,461	117,908,880	-	27,628,836	90,280,044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57,960,650	120,930,170	119,121,600	117,908,880
도 비	84,611,316	28,690,860	28,291,620	27,628,836
시군비	273,349,334	92,239,310	90,829,980	90,280,044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ㅇ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또는 평가제 A, B, 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의 교직원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이 공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차감

※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지급방식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세부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 보육교사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리원은 지원기준 적합자 전원, 보육교사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복지관,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및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본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직원(임시교직원)

나. 제외대상

- ㅇ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ㅇ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월급형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정부미지원 교사겸직 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다. 유의사항

- ㅇ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ㅇ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월급형(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대체교사(관리자 제외)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ㅇ 사 업 량 : 54,982명

ㅇ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ㅇ 총사업비 : 34,558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5,982	34,558,320	-	17,279,160	17,279,16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03,076,640	33,559,080	34,959,240	34,558,320
도 비	51,538,320	16,779,540	17,479,620	17,279,160
시군비	51,538,320	16,779,540	17,479,620	17,279,16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월급형 대체교사도 동일 기준 정부지원 단가 적용, 관리자 제외)
  - * 월급여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지급 가능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처우추가”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세부 지원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본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추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3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일정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02년, 2012년(다문화), 2018년(영아심화)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구 분	지원액	대 상	전문교사 요건
영 아 전문교사	월50천원/인	• 영아반 담당교사 ※ 일시보육반(0,2세)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월30천원/인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다 문 화 전문교사	월50천원/인	•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장 애 아 전문교사	월100천원/인	• 장애아반 담당교사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육교사 교육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2012년까지 시행)" 240시간 이수자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③ 유자격자로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조

※ 원장(대표자) 겸임교사는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전문교사는 직무교육 이수시 "특별직무교육" 과정 이수

ㅇ 사 업 량 : 33,014명

ㅇ 총사업비 : 18,89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33,014	18,889,680	-	4,485,912	14,403,768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5,313,520	17,974,800	18,449,040	18,889,680
도 비	13,165,596	4,263,756	4,415,928	4,485,912
시군비	42,131,654	13,694,774	14,033,112	14,403,768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영아전문교육과 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병급 가능
- 신규 대상자일 경우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가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특수근무”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나. 제외대상

○ 보조교사, 월급형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야간연장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단, 0세아 전용,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야간연장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자격확인서 등 지급요건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보육교사교육원 현황은 본 지침 양성교육기관 참조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4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03년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ㅇ 사 업 량 : 21,610일

ㅇ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일83천원), 조리원(일70천원) 지원

ㅇ 총사업비 : 1,69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일)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1,610	1,692,355	-	426,666	1,265,689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380,961	1,806,366	1,882,240	1,692,355
도 비	1,400,883	494,063	480,154	426,666
시군비	3,992,661	1,324,886	1,402,086	1,265,689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담임 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야간 연장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	○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	○	○	○
	연가		1~10일		○	○	○	○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	○	○	○
	건강검진		1일		○	○	○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O	O	O	O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O	O	O	O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	○	○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	○	○	○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	○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	○	○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년		○	×	×	○
	출산전후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	×	×	×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 최우선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나. 사업관리

ㅇ 채용방법(원장 채용)
-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인력풀 활용 및 연계
-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모집

○ 자격조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는 동일 자격 소지자 우선채용
- 조 리 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권장
  ※ 식품위생법상 배치된 조리사(50인 이상 식사제공)의 대체인력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이외(50인 미만 식사제공)에는 자격 소지여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인력관리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기준 준용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자격확인, 경력관리 등 준용

다. 지원기준

○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83,140원/인(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2021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0,393원)으로 지급 가능, 단, 지급액 원단위 발생시 올림하여 지급 (예 : 7시간=72,751원 => 72,760원 지급)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 리 원 : 일 70,00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8,750원)으로 지급 가능, 기존 조리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추가근무가능(단, 최대 8시간)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단, 65세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리원(0세아전용・공공형・가정민간 어린이집,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대체인력은 65세까지 지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ㅇ 제외대상

- 보조교사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라. 유의사항

ㅇ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ㅇ 시·군에서는 대체인력 임면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활용하여 불편 최소화

※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ㅇ 본 지침외 사항은 2021년 보육사업안내 준용

4-5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교사 확충에 기여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1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09년 ~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농정부서)에서 '16년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부서)로 이관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치료사 포함)

ㅇ 사 업 량 : 12,389명

ㅇ 지원내용 : 월 110천원/인 지원

ㅇ 총사업비 : 15,48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2,389	15,482,849	8,624,000	4,067,968	2,790,881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46,365,017	15,386,752	15,495,416	15,482,849
국 비	25,542,000	8,324,000	8,594,000	8,624,000
도 비	12,095,302	3,967,734	4,059,600	4,067,968
시군비	8,727,715	3,095,018	2,841,816	2,790,881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나. 지원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다. 지원단가 : 월 11만원

라. 지급 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월 포함 3개월)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등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6 담임교사지원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1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ㅇ 시행시기 : 담임교사 지원비(2012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2020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ㅇ 사 업 량 : 51,549명

ㅇ 지원내용 : 담임교사 월 240천원/인, 연장보육 전담교사 월 120천원/인 지원

ㅇ 총사업비 : 134,74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1,549	134,740,417	76,478,700	36,097,024	22,164,693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368,890,827	110,113,583	124,036,827	134,740,417
국 비	207,629,700	60,839,000	70,312,000	76,478,700
도 비	98,319,367	29,013,226	33,209,117	36,097,024
시군비	62,941,760	20,261,357	20,515,710	22,164,693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ㅇ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

ㅇ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ㅇ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다. 지원단가

ㅇ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4만원

ㅇ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2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라. 지급방식

ㅇ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ㅇ 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담임교사지원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7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국 ·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1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ㅇ 사 업 량 : 7,000명

ㅇ 지원내용 : 월 75천원/인 지원

ㅇ 총사업비 : 5,94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000	5,942,840	3,386,000	1,597,571	959,269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8,105,368	6,047,564	6,114,964	5,942,840
국 비	10,258,000	3,386,000	3,486,000	3,386,000
도 비	4,856,210	1,614,326	1,644,313	1,597,571
시군비	3,043,873	1,099,953	984,651	959,269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지원단가 : 월 7만 5천원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4-8 대체교사 인건비

국 ·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어린이집 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1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09년 ~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ㅇ 사 업 량 : 1,029명

ㅇ 지원내용 : 대체교사 인건비 월 2,271천원/인(8시간 기준) 지원,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한 대체교사 일 83천원/인(8시간 기준)

ㅇ 총사업비 : 30,22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029	30,225,502	17,066,100	8,085,985	5,073,417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73,958,119	18,735,000	24,997,617	30,225,502
국 비	41,441,100	10,320,000	14,055,000	17,066,100
도 비	19,676,434	4,929,900	6,660,549	8,085,985
시군비	12,890,585	3,485,100	4,332,068	5,073,417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내용

ㅇ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

ㅇ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ㅇ 교사겸직원장

ㅇ 연장보육 전담교사

ㅇ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ㅇ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 1~10일, 최대 10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발생 시 지원

ㅇ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0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ㅇ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0일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table>
<tr><th>구분</th><th>우선순위</th><th colspan="2">지원 사유</th><th colspan="2">지원 일수</th><th>비고</th></tr>
<tr><td rowspan="5">상시</td><td>1</td><td colspan="2">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td><td colspan="2">5일
최대 10일</td><td rowspan="5">사전
신청</td></tr>
<tr><td rowspan="2">2</td><td colspan="2">본인 결혼(우선 지원)</td><td>1~5일</td><td rowspan="2">최대
10일</td></tr>
<tr><td colspan="2">연가</td><td>1~10일</td></tr>
<tr><td rowspan="2">3</td><td colspan="2">예비군 훈련</td><td colspan="2">훈련 기간</td></tr>
<tr><td colspan="2">건강검진*</td><td colspan="2">1일</td></tr>
<tr><td>4</td><td colspan="2">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td><td colspan="2">회당 1일</td></tr>
<tr><td rowspan="12">긴급</td><td rowspan="2">최우선</td><td colspan="2">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td><td colspan="2">기간 제한없음</td><td rowspan="12">수시
신청</td></tr>
<tr><td colspan="2">보육교사 권익보호 등 위한 긴급지원 등</td><td colspan="2">기간 제한없음</td></tr>
<tr><td colspan="2" rowspan="4">가족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 colspan="2">5일</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 colspan="2">3일</td></tr>
<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 colspan="2">3일</td></tr>
<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 colspan="2">1일</td></tr>
<tr><td colspan="2">본인 질병 등
사고</td><td>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td><td colspan="2">1~10일
최대 10일</td></tr>
<tr><td colspan="2" rowspan="3">모성보호**</td><td>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td><td colspan="2">1일
최대 3일</td></tr>
<tr><td>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td><td colspan="2">5일
최대 10일</td></tr>
<tr><td>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td><td colspan="2">1일
최대 3일</td></tr>
</table>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감염성 질환 의심으로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라. 지원방식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 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1년 1월 ~ '21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18년까지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교사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원단가) 월 2,271천원, '21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1,829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 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바. 유의사항

ㅇ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다. 지원내용

• 지원단가: 일 83,14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마.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4-9 보조교사 인건비

국 ·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 · 놀이 · 학습 ·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1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율 50% 이상)

ㅇ 사 업 량 : 17,905명(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량 포함)

ㅇ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월 1,011천원/인 지원

ㅇ 총사업비 : 219,25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비 포함)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7,905	219,252,651	124,514,200	58,788,000	35,950,451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515,212,776	112,648,493	183,311,632	219,252,651
국 비	291,087,667	62,398,000	104,175,467	124,514,200
도 비	137,752,573	29,757,580	49,206,993	58,788,000
시군비	86,372,536	20,492,913	29,929,172	35,950,451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2) 지원 제외 대상

ㅇ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3) 지원인원

'1) 지원대상' 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을 추가 지원가능(1개소 당 지원인원 상한 없음)

①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②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지원(정원충족률 50% 이상)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예시)						
지원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고
장애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 반 수 산정 시,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영·유아반 수(개)	2~4	5~7	8~10	11~13	14~16	

나. 세부기준

ㅇ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

ㅇ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이 '가.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ㅇ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 지역 실정에 따라 '가. 지원기준'과 평가인증(평가제 결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 가능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ㅇ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ㅇ (지원단가) '21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11천원*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ㅇ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 (참고) III.보육교직원 자격 > 4.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

ㅇ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 업무 대행 가능

라. 사업기간 : '21년 3월 ~ '22년 2월

마. 지원 절차

ㅇ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21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1.3~'22.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ㅇ (채용 및 임면보고)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ㅇ (임면승인)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준수

ㅇ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ㅇ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 유의사항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한 계산하여 지원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20.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21년, '22년은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보육사업안내」규정 준수

4-10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하여 보육교사 업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1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ㅇ 시행시기 : 2020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연장반 구성되어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과 총 이용시간 기준을 충족하며, 전자출결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

ㅇ 사 업 량 :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량 참고

ㅇ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보조교사 예산포함) 월 1,011천원/인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20천원/인 지원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ㅇ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ㅇ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다. 지원 인원

ㅇ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ㅇ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

ㅇ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ㅇ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마. 지원 단가

ㅇ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11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0천원 지원

*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수당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바. 자격 조건

ㅇ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 사업기간

ㅇ 2021년 3월 ~ 2022년 2월

아. 지원 절차

ㅇ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연장반 정원 50% 이상 충족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 시·군·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다만, 학기 초('21년 3~4월)는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기준 중 ②, ③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ㅇ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자. 유의사항

ㅇ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인 경우
-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ㅇ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ㅇ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ㅇ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ㅇ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4-11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 ·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2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ㅇ 사 업 량 : 11,462명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ㅇ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ㅇ 지원내용 : 호봉에 따른 월 급여액의 80%(원장, 영아반 교사), 30%(유아반 교사) 지원

ㅇ 총사업비 : 229,64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1,902	229,642,634	129,273,900	61,212,462	39,156,272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632,506,851	180,161,570	222,702,647	229,642,634
국 비	353,570,933	98,893,000	125,404,033	129,273,900
도 비	167,972,718	47,379,533	59,380,723	61,212,462
시군비	110,963,200	33,889,037	37,917,891	39,156,272

4-12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국 ·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2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ㅇ 사 업 량 : 4,406명

- 영아전담 421, 장애아전문 340, 야간연장 2,921, 장애아통합 724

ㅇ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영아전담	• 월지급액의 원장·영아반교사 80%, 유아반 30%, 조리원 1명 100%
장애아전문	• 월지급액의 원장·보육교사 80%, 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80%+월30만원(수당), 치료사 100%+월30만원(수당), 조리원 1명 100% ※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자격소지자 : 월 수당 15만원 ※ 비장애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반 교사 포함) : 월 수당 10만원
야간연장	• 정부지원시설 : 월지급액의 80%, 최대 5명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472천원, 최대 5명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반별 461천원, 최대 5개반
장애아통합	•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693천원 ※ 연장반 전담 및 비장애반 담임교사는 "장애아전문"과 동일

ㅇ 총사업비 : 72,17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406	72,173,488	40,477,600	19,233,763	12,462,125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214,403,195	68,012,140	74,217,567	72,173,488
국 비	119,272,326	37,193,000	41,601,726	40,477,600
도 비	56,858,985	17,848,942	19,776,280	19,233,763
시군비	38,271,884	12,970,198	12,839,561	12,462,125

4-1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국 ·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4733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로 보육에 필요한 인성 및 지식·능력 개발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공공성 마인드 함양

□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ㅇ 사 업 량 : 8,580명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어린이집 현직 보육교직원

ㅇ 지원기준 : 직무*(8만원), 승급(14만원), 원장사전(16만원, 자부담)

* (직무) 기본교육 / 심화교육(8만원), 장기 미 종사자 교육(8만원, 자부담)

ㅇ 교육과정 : 직무(40시간), 승급(80시간), 원장사전직무(80시간)

ㅇ 총사업비 : 943,75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8,580명	943,750	536,000	253,393	154,357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2,550,331	662,831	943,750	943,750
국 비	1,437,382	365,382	536,000	536,000
도 비	681,482	174,696	253,393	253,393
시군비	431,467	122,753	154,357	154,357

※ 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계획 시행 예정('21. 3월 중)

4-14 영아전문(심화) · 다문화전문 교육 운영 비예산

보육품질관리팀
☎ 8008-4733

영아·다문화 보육의 전문교육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품질 제고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ㅇ 교육과정 및 대상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전문교육	영아전문과정	· 교육 희망 보육교사	3,500명
	영아전문심화과정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후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500명
	다문화전문과정	· 교육 희망 보육교사	370명
	합 계		7,370명

ㅇ 교육기관 : 경기도 보육교사교육원 6개소

ㅇ 교육과정별 시간 및 수강료

과정명		교육시간	수강료	비 고
전문교육	영아전문과정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44만원	교육비 자부담
	영아전문심화과정	20시간	10만원	
	다문화전문과정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44만원	

□ 사업 추진 안내

ㅇ 보육교사교육원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추진

- 해당 시·군에서 재직(경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정

※ 영아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 0세아전용 어린이집 교사, ②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③ 낮은 연령반 보육교사(0세반 교사 우선)

※ 영아전문심화교육 선발 우선순위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이후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많은 순서로 선발(수료증과 경력증명서로 확인)

※ 다문화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 만 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② 평가미인증 어린이집 교사 ③ 기타 희망자

ㅇ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평가 성적(100점 만점) 80점 이상인 자
-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수강 필수

※ 영아전문심화과정은 제외

《 수강방법 》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www.dre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방법 1)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 취업 → 교육, 컨설팅 →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수강신청

(방법 2) 상단 검색창에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입력 후 수강신청

ㅇ 수료자 관리

- 교육원 : 수료자 명단을 해당 시·군으로 통보

※ 영아전문·다문화전문 교육과정의 경우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이수 확인 후 교육생의 교육 수료처리

- 시 · 군 : 인사기록부에 교육이수사항 기록 관리
- 교육과정별 수료자 인센티브

과정명		수료자 인센티브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영아전문심화과정	· 특수근무수당(월3만원 / 인) 추가 지원
	다문화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 영아·다문화전문 교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원 불가

- 영아전문(심화) · 다문화전문 교육과정 운영은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4-15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2556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수급 해결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어린이집 특수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교육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평가)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신규인력양성과정 참여 시 (12개 시)

- 남부(10개) : 성남, 용인, 안산,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김포, 하남
- 북부(2개) : 고양, 남양주

ㅇ 지원내용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ㅇ 사 업 량 : 190명

ㅇ 사 업 비 : 190,000천원 (도 57,000천원, 시·군 133,000천원)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남양주시 제안) 선정사업('20~'22년 3년간 추진 후 일몰사업)

□ 예산현황

ㅇ 총사업비 : 190,00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정률보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190명	190,000	57,000	133,000	

□ 사업 추진 안내

ㅇ 운영방식

- 시·군별 지역특성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교육 추진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교육 지원

4-16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2556

현장실습 등 전문적인 대면교육 추진을 통한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보육환경 점검·개선 등 직무역량 강화로 특수보육의 질 제고

□ 관련근거

ㅇ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평가)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어린이집 현직 장애영유아전담교사

※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참여 시 (5개 시) : 성남, 용인, 안산, 화성, 광명

ㅇ 지원내용 : 재직 중인 장애영유아전담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

- 통합보육 교수전략, 교육프로그램 작성·진단, 현장실습 등 전문적인 대면교육

ㅇ 사 업 량 : 59명

ㅇ 사 업 비 : 29,500천원(도 8,850천원, 시·군 20,650천원)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남양주시 제안) 선정사업('20~'22년 3년간 추진 후 일몰사업)

□ 예산현황

ㅇ 총사업비 : 29,50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정률보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59명	29,500	8,850	20,650	

□ 사업 추진 안내

ㅇ 운영방식

- 시·군별 지역특성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추진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교육 지원

Ⅳ. 부　　록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 보육료 지원기준표·처우개선비 지원표

▣ 주요 보육통계표

▣ 자치법규(소관조례)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21.1월 현재)

연번	시군명	운영기관	주소	개소일	비고
합계		운영 30개소(경기도2, 27시군 28개)			
1	**경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5층**	**2003.11.12**	
2	수원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정자동)	2008.09.01	
3	수원동부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영통동)	2015.11.20	
4	성남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복정동 667번지)	1993.03.01	
5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0	1999.07.10.	
6	용인시	용인송담대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2015.03.13	
7	안산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채플관 B6호(일동)	1994.05.01	
8	안양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안양동)	1997.03.12	
9	평택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비전동)	2007.10.02	
10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23번길 37	2006.08.03	
11	화성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어린이문화센터 4층)	2009.08.25	
12	광명시	사회복지법인한솔교육희망재단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2011.01.20	
13	군포시	안양대학교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2010.01.28	
14	김포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2014.12.22	
15	이천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길 38 (중리동)	2006.07.01	
16	오산시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0	2015.09.01	
17	의왕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 여성회관 지하1층(오전동)	2001.01.19	
18	과천시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2013.11.01	
19	광주시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2016.04.27	
20	하남시	이케이보육경영연구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125 5 ,6층 (풍산동 상아프라자2)	2018.07.01	
21	여주시	여주대학교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	2019.10.01	
22	**경기북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2008.02.27**	
23	고양시	사회복지법인대건카리타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2003.04.03.	
24	남양주시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2015.07.17	
25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 (의정부2동 572-5)	2007.09.03	
26	파주시	파주시어린이집 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2012.06.01	
27	양주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3층(덕정동)	2013.04.10	
28	구리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2013.11.26	
29	포천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내	2018.01.02.	
30	가평군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2020.03(예정)	

○ **'21년 개소예정 : 안성, 양평, 동두천 ※ 연천(부지확보중)**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2021. 2월 현재]

연번	교육기관명	원장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총 23개소 (보육교사교육원 6개소, 대학교 17개소)					
1	경기 보육교사교육원	유현정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8	235-2290	
2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이해영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350-7518	
3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완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299-3331	
4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신완식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330-6117	
5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병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899-7075	
6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신재홍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750-5760	
7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정재탁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740-1114	
8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재영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032-610-0575	
9	성빈센트 보육교사교육원	김정남	부천시 경인로 194, 2층	032-655-0453	
10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진국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496-4658	
11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주성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400-7096	
12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성락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490-6000	
13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상욱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467-4502	
14	에듀케어 보육교사교육원	이창수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5, 6층	466-3131	
15	한국복지대학교평생 교육원	김지숙	평택시 삼남로 283(장안동)	610-4714	
16	평택대글로벌 휴먼평생교육원	신승연	평택시 서동대로 3825	659-8006	
17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연옥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	760-0202	
18	고양 보육교사교육원	이만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2, 5층	970-8100	
19	김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조정환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97	999-4299	
20	경복대학교 영유아교육원	박미경	남양주시 진전읍 경복대로 425	570-9925	
21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민문기	구리시 검배로 61, 3층	569-9090	
22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김성일	의정부시 의정로52번길 18, 4층	876-5546	
23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승구	동두천시 벌마들로40번길 30	870-2964	

보육료 지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 고
수 납 한도액	국 공 립		484	426	353	260			연장반 추가지원 (영아반2, 유아반1, 0세/장애아3)
	민 간					353	330		
	가 정					356			
	시간 연장(시간당)		3.2 (장애아 4.2)						
	2 4 시 간		968	852	706	52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의 200%
지원 단가	보육료 (소득무관)	0~2세	484	426	353	260			연장반 추가지원 (영아반2, 유아반1, 0세/장애아3)
		시간연장 (시간당)	3.2 (장애아 4.2)						
		24시간	726	639	529.5	390			보육료지원액의 150%
	누리차액 보육료	민 간				93	70		전액 지원
		가 정				96			
	장 애 아		502(누리과정 장애아 502)						만12세이하 미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어린이집 4시간 이상 이용시(차상위이하 : 100, 장애아동 : 251)						
기 관 보 육 료			528	287	194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장애아 587) (장애아방과후 500)
가정 양육수당	0~5세		200	150	100				
	농어촌		200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200			100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계	도 자체사업			국비지원사업		누리과정
				처우 개선비	특수 근무수당	처우 개선비 추가지원	담임교사 지원비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처우 개선비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	영아반 (0~2세)	550	200	80	30	240 *연장보육전담교사120		
		유아반 (3 ~ 5세)	560	110		90			360 *영유아혼합반240
	교사겸직원장		155		80			75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영아반 (0~2세)	550	150	80	80	240 *연장보육전담교사120		
		유아반 (3 ~ 5세)	560	110		90			360 *영유아혼합반240
	원장	교사겸직 원장	305	150	80			75	
		원 장	150	150					

※ 평가미인증(평가제D) 어린이집인 경우 도비지원 처우개선비 △3만원(누리과정은 △5만원)

※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경기도 교육원 교육 수료 한 영아반담당교사 지원(영아전문5만원, 영아전문심화 3만원)

주 요 보 육 통 계

❒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20. 12월말)

구 분		총 영유아수 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②	유치원 이용 유아수③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수 ④=(①-②-③)
전국(%)		2,562,100(100)	1,244,396(48.6)	612,538(23.9)	705,166(27.5)
경기도	(%)	**743,268(100)**	**358,813(48.3)**	**169,686(22.8)**	**214,769(28.9)**
	전국대비%	**(29.0)**	**(28.8)**	**(27.7)**	**(30.5)**
서울시(%)		407,374(100)	196,260(48.2)	74,657(18.3)	136,457(33.5)

※ 총 영유아수 : 주민등록통계 만0~6세 / 유치원 이용 유아수 : 교육통계 2020년 4월 기준

❒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 : 명/ '20.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35,352(100)	4,958(14.0)	1,316(3.7)	671(1.9)	11,510(32.6)	15,529(43.9)	152(0.4)	1,216(3.4)
경기도	(%)	**10,761(100)**	**1,086(10.1)**	**64(0.6)**	**112(1.0)**	**3,431(31.9)**	**5,717(53.1)**	**67(0.6)**	**284(2.6)**
	전국대비	**(30.4)**	**(21.9)**	**(4.9)**	**(16.7)**	**(29.8)**	**(36.8)**	**(44.1)**	**(23.4)**
서울시(%)		5,370(100)	1,749(32.6)	27(0.5)	92(1.7)	1,326(24.7)	1,857(34.6)	31(0.6)	288(5.4)

❒ 어린이집 정원

(단위 : 명/ '20.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628,260(100)	302,378(18.6)	119,289(7.3)	48,839(3.0)	772,536(47.4)	290,123(17.8)	4,958(0.3)	90,137(5.5)
경기도	(%)	**455,556(100)**	**73,091(16.0)**	**5,557(1.2)**	**8,997(2.0)**	**237,263(52.1)**	**107,293(23.6)**	**1,995(0.4)**	**21,360(4.7)**
	전국대비	**(28.0)**	**(24.2)**	**(4.7)**	**(18.4)**	**(30.7)**	**(37.0)**	**(40.2)**	**(23.7)**
서울시(%)		245,863(100)	101,037(41.1)	1,861(0.8)	5,427(2.2)	82,308(33.5)	33,972(13.8)	973(0.4)	20,285(8.3)

❒ 어린이집 현원

(단위 : 명/ '20.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244,396(100)	253,251(20.4)	78,322(6.3)	34,066(2.7)	578,196(46.5)	230,444(18.5)	3,716(0.3)	66,401(5.3)
경기도	(%)	**358,813(100)**	**63,480(17.7)**	**3,806(1.1)**	**6,233(1.7)**	**180,182(50.2)**	**87,505(24.4)**	**1,578(0.4)**	**16,029(4.5)**
	전국대비%	**(28.8)**	**(25.1)**	**(4.9)**	**(18.3)**	**(31.2)**	**(38.0)**	**(42.5)**	**(24.1)**
	정원충족률	**78.8%**	**86.9%**	**68.5%**	**69.3%**	**75.9%**	**81.6%**	**79.1%**	**75.0%**
서울시	(%)	196,260(100)	85,925(43.8)	1,393(0.7)	4,242(2.2)	62,749(32.0)	27,106(13.8)	760(0.4)	14,085(7.2)
	정원충족률	79.8%	85.0%	74.9%	78.2%	76.2%	79.8%	78.1%	69.4%

❒ 특수보육어린이집

(단위 : 명/ '20. 12월말)

구 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공공형	0세아
전국	12,758	366	177	1,211	195	7,769	152	298	2,311	279
경기도	**3,328**	**42**	**21**	**420**	**8**	**1,832**	**39**	**48**	**639**	**279**
(전국대비%)	**(26.1)**	**(11.5)**	**(11.9)**	**(34.7)**	**(4.1)**	**(23.6)**	**(25.7)**	**(16.1)**	**(27.7)**	**(100)**
서울시	2,639	35	8	388	65	2,048	27	68	-	-
(전국대비%)	(20.7)	(9.6)	(4.5)	(32.0)	(33.3)	(26.4)	(17.8)	(22.8)		

❒ 보육교직원

(단위 : 명/ '20. 12월말)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전국	325,669(100)	35,199(10.8)	237,966(73.1)	1,908(0.6)	650(0.2)	902(0.3)	1,055(0.3)	30,182(9.3)	17,807(5.5)
경기도	**93,164(100)**	**10,710(11.5)**	**68,266(73.3)**	**401(0.4)**	**68(0.1)**	**277(0.3)**	**331(0.4)**	**10,174(10.9)**	**2,937(3.2)**
(전국대비%)	**(28.6)**	**(30.4)**	**(28.7)**	**(21.0)**	**(10.5)**	**(30.7)**	**(31.4)**	**(33.7)**	**(16.5)**
서울시	53,238(100)	5,347(10.0)	38,954(73.2)	434(0.8)	71(0.1)	157(0.3)	165(0.3)	3,982(7.5)	4,128(7.8)
(전국대비%)	(16.5)	(15.2)	(16.4)	(22.7)	(10.9)	(17.5)	(15.6)	(13.2)	(23.2)

경기도 보육 조례

[제정 2003. 11. 26.] [경기도 보육조례 제6827호, 2020. 11. 12. 일부개정]

(소관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4.4.>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9.3.13.>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4.>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의 등록금 받음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3.13.>
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9. 중장기 보육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4.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전문개정 2013.4.4.]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전문개정 2013.4.4.]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전문개정 2013.4.4.]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4.4.]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 받을 당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 날의 그 다음 날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8.] <개정 2013.4.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7.17.>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4.4.>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4.30.>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하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5.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제11조에 따른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4.4.]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4.4.]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11.8., 2011.3.15., 2015.4.30.>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5.4.30.>

1.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관리 [신설 2020.05.19.]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12.1.5.>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5. 육아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인력은행 운영

7. 평가제 컨설팅 [전문개정 2020.05.19.]

8.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12.1.5.>

9.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전문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여

10. 보육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

11. 어린이집 현황조사 및 주민 요구도 조사 <개정 2012.1.5.>

12. 놀이지도 사업 [신설 2020.05.19.]

13. 장애영유아, 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신설 2020.05.19.]

14.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5. 영유아 문화공연단 운영을 통한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6. 어린이집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간의 동아리 등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20.05.19.]

18. 그 밖의 영유아 및 아동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 2015.4.30., 2015.11.04.> [단서삭제 2015.11.04.]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육관련단체 관계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1.5., 2015.4.30.>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5.4.30.>

⑥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에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5.11., 2015.4.30.>

제14조(비용)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 포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2015.07.17.>

제15조(보육계획) 도지사는 보육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5조의2(0세아 보육 특례) <개정 2015.07.17.>

어린이집 운영자는 만1세 미만 영아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15조의3(역세권 등의 어린이집 설치) 도지사,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버스터미널 등의 인근에 어린이집의 설치를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15조의4(보육료 고시) 도지사는 매년 1월 말 이내에 정부미지원시설(3~5세) 보육료를 결정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제15조의5(우수 교재·교구 보급)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작품 등 우수 교재·교구를 우선하여 어린이집에 보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6(소아당뇨가 있는 영유아의 우선 선발)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7(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지원)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와는 별개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 시설 개선비 등 필요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시장·군수는 매년 관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를 시·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17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권익을 존중하고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17조의2(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관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사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1.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 <개정 2013.4.4.>
2. 휴일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보육지원 사업비 및 장애아ㆍ다문화가족 자녀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전문개정 2020.11.12.]
3.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개정 2012.1.5.>
4.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관련된 비용 <개정 2012.1.5.>
5. 삭제 <2020.05.19.>
6. 0세아 전용어린이집(시장·군수가 선정하여 도의 지정을 받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개정 2013.4.4., 2015.07.17.>
7. 어린이집의 어린이 집 안전공제회 가입비·공제료 지원 <개정 2012.1.5.>
8. 교재교구비 지원 [신설 2011.3.15.]
9.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신설 2013.4.4.]
10. 보육인대회, 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육아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7.7.17.]
11.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17. 9.29.]
1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 및 A형 간염 등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신설 2017. 9.29.]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5.11., 2013.4.4.,2017. 9.29.>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보육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13.4.4.>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관리감독) 도지사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5.07.17., 2020.05.19.>

제22조(예산지원의 제한 등) 도지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4.12.31., 2015.07.17., 2020.05.1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16. 2. 24.]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5169호]

(소관부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 “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 도지사는 교육원 운영,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2.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보육정책과장	김용범	031-8008-2540	· 보육정책 업무 총괄
보육정책팀장	김덕선	031-8008-2370	· 보육정책팀 업무 총괄
주무관	전창복	031-8008-4718	· 주요회의 및 보육정책 수립 등 현안
주무관	이혜빈	031-8008-2799	· 과예산, 통계 등
주무관	강민희	031-8008-2598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 관리 등
주무관	김새난	031-8008-4720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
주무관	고의인	031-8008-4725	· 서무, 회계, 표창 등
보육지원팀장	정덕해	031-8008-2571	· 보육지원팀 업무 총괄
주무관	이화영	031-8008-2572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주무관	동창환	031-8008-2574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주무관	신성원	031-8008-4715	· 시간제 보육지원 등
주무관	김현정	031-8008-2573	·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보육기반팀장	나명숙	031-8008-2551	· 보육기반팀 업무총괄
주무관	한수경	031-8008-2542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주무관	김지현	031-8008-4732	· 직장어린이집 운영, 안전관리 업무 등
주무관	정지연	031-8008-2543	·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
보육컨설팅팀장	김양현	031-8008-2595	· 보육컨설팅팀 업무 총괄
주무관	조선래	031-8008-2596	· 어린이집 컨설팅 등
주무관	박소현	031-8008-2568	·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설치 운영 등
보육품질관리팀장	정연주	031-8008-2557	· 보육품질관리팀 업무 총괄
사무관	김순천	031-8008-4733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관리시스템 관리 등
주무관	최서영	031-8008-2556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도입 활성화 등
주무관	김선주	031-8008-4744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관리
주무관	홍미라	031-8008-4743	· 경기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 등
주무관	김세명	031-8008-4726	· 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교직원 교육 등

2021년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인　　쇄 : 2021년 2월
발　　행 : 2021년 2월
발 행 처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게 시 처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전　　화 : (031)8008-2370
전　　송 : (031)8008-2549